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중구 행정예산분석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민성철 예산분석관
신지현 예산분석관

지 원 | 정진아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결산 개요 / 3

1. 현 황 3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8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9

II. 개별 사업 분석 / 10

1.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필요성 10
2. 청년 종합 실태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 17
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 관리 강화 필요 21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의 예비비 집행 부진 25
5. 14개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필요 29

[국가보훈부]

I. 결산 개요 / 39

1. 현 황 39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46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47



CONTENTS

II. 개별 사업 분석 / 48

- 1.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48
- 2.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54
- 3. 정부기념행사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58
- 4.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선정 시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61
- 5. 생활조정수당 과부족에 따른 연례적 예산조정 개선 필요 65

[국민권익위원회]

I. 결산 개요 / 71

- 1. 현 황 71
-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5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77

II. 개별 사업 분석 / 78

-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78
- 2. 행정심판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82

[공정거래위원회]

I. 결산 개요 / 87

- 1. 현 황 87
-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1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92

II. 개별 사업 분석 / 93

- 1. 연구용역비 집행 방식 개선 필요 93
- 2. 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과징금 부과처분 분석 100
- 3.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의 문제점 105
- 4.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의 문제점 111
- 5. CP제도의 실효성 점검을 전제로 한 활성화 노력 필요 116

[금융위원회]

I. 결산 개요 / 125

- 1. 현 황 125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3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4



CONTENTS

II. 주요 현안 분석 / 136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분석 136
 - 1-1. 정책모기지 공급 사업의 특성과 사업 환경을 고려한 출자관리 필요 138
 - 1-2. 제3차 안심전환대출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143
- 2.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분석 ... 148
 - 2-1.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추진 상의 문제점 149
 - 2-2.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보증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155
 - 2-3.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추진 상의 문제점 159

III. 개별 사업 분석 / 166

- 1.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 분석 166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사업 분석 176
- 3. 코넥스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와 검토 필요 185
- 4.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 분석 192
-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 상의 문제점 197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I. 결산 개요 / 205

- 1. 현 황 2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 결산 개요 / 211

- 1. 현 황 211
- 2.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5

II. 개별 사업 분석 / 216

- 1.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를 통합·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출범 필요 216
- 2.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 강화 필요 222
- 3.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적정 비목 집행 필요 228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00만원이며, 2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0%인 2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3	23	23	286	286	0	0	100.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28억 2,700만원이며, 이 중 95.0%인 6,298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5,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4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43,929	642,468	650,574	618,832	553	31,189	95.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2,253	12,253	12,253	11,028	0	1,225	90.0
합계	656,182	654,721	662,827	629,860	553	32,414	95.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6,300만원(1,043.5%)이 증가한 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700만원(21.2%)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363	23	23	286	263	△7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48억 6,100만원(3.8%)이 감소한 6,29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61억 원 6,500만원(2.6%)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613,389	655,876	654,415	629,554	△24,861	16,165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자산은 4,123억 1,900만원, 부채는 11억 4,200만원으로 순자산은 4,111억 7,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7억 4,000만원, 일반유형자산 4,070억 800만원, 무형자산 34억 8,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0억 8,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1억 100만원(1.7%) 감소하였다. 이는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피해산정 조사 등 관련 선급금 증가로 인한 유동자산 81억 3,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400만원, 장기충당부채 10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원(9.6%) 증가하였다. 이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장기충당부채 1억 9,2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12,319	419,420	△7,101	△1.7
Ⅰ. 유동자산	740	8,872	△8,132	△91.7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407,008	407,591	△583	△0.1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3,487	2,688	799	29.7
Ⅵ. 기타비유동자산	1,085	269	816	303.3
부 채	1,142	1,042	100	9.6
Ⅰ. 유동부채	44	136	△92	△67.6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1,098	906	192	21.2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411,178	418,378	△7,200	△1.7
Ⅰ. 기본순자산	127,637	127,637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4,733	1,993	△6,726	△337.5
Ⅲ. 순자산 조정	288,274	288,748	△474	△0.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452억 6,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216억 9,800만원, 관리운영비 1,238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억 7,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30억 7,800만원(2.1%) 증가한 6,452억 6,900만원이며, 이는 정부출연비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37억 7,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 프로그램(5,216억 9,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98억 6,400만원과 경비 639억 8,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21,698	507,927	13,771	2.7
가. 프로그램 총원가	521,698	507,927	13,771	2.7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123,846	124,646	△800	△0.6
III. 비배분비용	0	0	0	0.0
IV. 비배분수익	275	383	△108	△28.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45,269	632,191	13,078	2.1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645,269	632,191	13,078	2.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4,183억 7,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111억 7,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2억원(1.7%)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461억 5,3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97억 5,900만원,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841억 3,8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6,388억 2,9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2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4억 7,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418,378	345,239	73,139	21.2
Ⅱ. 재정운영결과	645,269	632,191	13,078	2.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38,543	621,428	17,115	2.8
Ⅳ. 조정항목	△474	83,902	△84,376	△100.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411,178	418,378	△7,200	△1.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라. 재정 구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3억 600만원을 전출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백만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 ①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 ②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사업** 등이 있다.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은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지원을 외 교부로 이관하는 등 7억 5,000만원이 감액(20억 2,000만원→12억 7,000만원)되었고,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사업은 중복 편성된 홍보 예산 2억원이 감액(70억 600만원 → 68억 6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억 9,100만원이 증액(38억 3,100만원→41억 2,200만원)되었다.²⁾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감액 내역으로 ① **인건비(총액)**, ② **기본경비**, ③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사업** 등이 있으며, 국회의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은 없었다.

1) 정부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① 국정과제 중심의 관리 및 평가, ②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③ 규제혁신, ④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⑤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2022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나,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평가결과가 예산과 연계하여 환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며, 현재 성과지표는 모두 정성·결과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은 연도 중 예비비를 편성·배정받아 추진되었으나, 일부 사업비가 불용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예비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4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운영 실적(개최 횟수) 및 위원별(민간위원, 정부위원) 참여 횟수, 회의 방식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²⁾,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³⁾, 그리고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절차에 관하여 다른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재평가”⁴⁾ 등이 있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재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결과 활용 관련 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 차관급 21)의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기관별, 부문별(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로 종합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포털(evaluation.go.kr)에 공개되었다.⁵⁾

나. 분석의견

첫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나,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평가결과가 예산과 연계하여 환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7단계(매우우수/우수/다소 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부진)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의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

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무조정실도 정부업무평가 대상으로, 2022년에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총 46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정부업무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평가결과 공개는 국무조정실을 제외한 45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업들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⁶⁾ 사업 중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부진·미흡 또는 다소 미흡 등급을 받았고, ‘현안과제 추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사업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 ‘다소 미흡’ 등급을 받아 성과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사업의 다음연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어야 한다.

[최근 3개년 자체평가 하위결과 다음연도 예산 미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평가결과	연도	예산 ¹⁾	결산	2023 예산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구)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부진	2020	641	596	682
	미흡	2021	632	593	
	다소 미흡	2022	632	437	
청년정책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현안과제 추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다소 미흡	2021	138	131	134
	다소 미흡	2022	138	126	

주: 1) 청년정책 홍보 내역만 산출함

(구)청년정책 추진단 운영 사업이 2022년부터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 자료 재작성

그런데,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의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는 성과지표 변경 필요와 홍보·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3년간 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2023년에는 6억 8,2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현안과제 추진지원(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2021년과 2022년의 예산 규모가 1억 3,800만원으로 동일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2021·2022년 집행액보다 큰 규모인 1억 3,400만원이 반영되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가 미흡하였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업무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라는 점, 「정

6)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정부업무평가 시 관리과제 기준으로 ①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②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로 구분하여 평가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3개년 자체평가 하위결과를 받은 ②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만을 분석함

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평가결과를 예산 등에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기관별 이행상황 등도 점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자체평가 결과도 예산에 환류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성과지표는 모두 정성·결과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② 규제개혁 만족도, ③ 매체별 소통 만족도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국정과제의 이행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연 1회 조사⁷⁾하는 것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평가항목별 만족도 측정을 하는 것이고, ② 규제개혁 만족도는 정책수요자, 전문가, 유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만족도를 전문리서치 기관에서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며, ③ 매체별 소통 만족도는 홈페이지·SNS 이용자를 대상으로(표본수 약 2천명) 채널별⁸⁾ 접근경로, 방문목적, 콘텐츠·채널 만족도 등에 대해 웹 설문조사(구글 등) 기능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과지표별 목표치·실적 및 측정방법 등은 다음 표와 같다.

7) 120대 국정과제에 대해 총 19,200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2022년 11월, 설문조사)
- 일반국민: 12,000명, 정책수요자: 7,200명
- 평가항목별 만족도 측정: ①정책 필요성, ②정책내용의 적절성, ③정책효과 달성도 ④정책전반 만족도 4개 항목

8)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유튜브 등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프로그램 성과지표]

(단위: 점)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 분야	실적 및 목표치				지표 종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1	'22	'23		
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0.4	일반 재정	목표	4.66	4.67	4.68	정성 결과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연 1회 조사(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약 17,000명 대상) * 7점 척도 사용, 국정과제 필요성, 만 족도 등 항목별 점수를 가중 합산하 여 산출
			실적	4.66	4.48	-		
② 규제개혁 만족도	0.4	일반 재정	목표	69.83	69.84	72.5	정성 결과	정책수요자, 전문가, 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을 대상(부처별 표본수 약 90 ~130명)으로 규제개혁 성과만족도, 규제개혁 적극성 등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규제개혁성과에 대하여 면접·우편 이메일 등을통해 만족도조사 실시 * 7개 척도로 측정
			실적	72.65	73.4	-		
③ 매체별 소통 만족도	0.2	일반 재정	목표	3.81	3.81	3.82	정성 결과	홈페이지·SNS 이용자를 대상으로(표 본수 약 2천명) 채널별(홈페이지·블로 그·페북·인스타·트위터·유튜브 등) 접 근경로, 방문목적, 콘텐츠·채널 만족도 등에 대해 웹설문조사(구글 등) 기능을 활용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 일반국민과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시, 전문가 조사의 경우 개선방안 등 의견 청취가 주목적 *(전문가 선정 기준) 정책홍보·콘텐츠 제 작 등 분야의 교수 또는 경력 10년 이상 기업 임원급 * 5점 척도 사용 ($\sum$ 개인별 척도 + $\sum$ 전문 가 척도)/n (n=응답자 수)
			실적	3.82	3.83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② 규제개혁 만족도와 ③ 매체별 소통 만족도는 각각 105.1%, 100.5%로 나타나 목표를 달성한 반면, 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95.9%로 나타나 성과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② 규제개혁 만족도와 ③ 매체별 소통 만족도의 경우에도 매년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최근 3년(2021-2023년)간 목표치가 2021년 실적보다도 낮게 또는 같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다음연도 목표치는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의 성과지표는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의 목표치 설정 관련 내용]

프로그램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 (목표치) 목표치는 프로그램 내·외부 환경 변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국제수준과의 비교,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과거 3년 사업실적 평균 대비 금년 목표 증가율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적극성 □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결과중심 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대한 개선사항 기술 ◦성과보고서 실적은 차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목표치 수립 등에 활용되므로, 성과지표 적정성 및 목표치에 대한 합리성 등 제시
□ 성과지표 설정 원칙별 사례(①~⑥)¹⁾ ⑤ (신뢰성·검증가능성) 성과지표는 제3자가 검토하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증가능하고 공식력있는 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 - 성과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어야 함. -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	

주: 1) 「2022회계연도 프로그램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성과지표 설정 원칙별 사례(①~⑥), p24~27.

① 핵심성·포괄성, ② 구체성, ③ 측정가능성, ④ 인과성·달성가능성, ⑤ 신뢰성·검증가능성, ⑥ 적시성

자료: 2022회계연도 프로그램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및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한편,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객관적·정량적인 지표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성과지표는 모두 정성·결과지표이나, 규제개혁과 관련한 성과관리는 규제개혁건수 등과 같은 정량지표 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명확한 제도개선 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성과지표는 모두 정성·결과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¹⁾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²⁾ 등을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2022년도 예산현액 41억 2,100만원 중 3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4,122	4,113	8	117 △117	4,121	3,796	174	151	8,843
청년 종합 실태조사	1,200	1,200	-	-	1,200	1,179	-	21	15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7035-316

2)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분석의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2년에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응답자에게 2만 5,000원 상당의 조사 답례품을 지급하였으나, 청년의 경우에는 대면 방식 외에 온라인 등을 활용한 조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답례품 단가도 통계청 등 타 사업의 조사 답례품 대비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청년 종합 실태 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청년 종합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³⁾하여 공표하기 위해 2021년 1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본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항목설계 및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시범조사 등으로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으로 1,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청년 삶 실태조사”, 본조사(‘22.7.)를 실시하고 예산현액 12억원 중 11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3)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청년 종합 실태조사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	100	100	87	-	13
2022	-	1,200	1,200	1,179	-	2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2회계연도 주요 증액 사업인 청년 종합 실태조사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층 전반적 삶의 모습과 인식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2년간 청년 종합 실태조사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금액 ¹⁾	사업기간	용역입찰공고일	계약체결일	계약업체
2021	91	2021.5.20.~12.10.	2022.4.15.	2021.5.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1,184	2022.4.12.~12.20.	2022.3.4.~3.25.	2022.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1) <2021년 연구용역> 예산액 100백만원, 계약금액 91백만원, 집행액 87백만원, 불용액 13백만원
 <2022년 실태조사용역> 예산액 1,200백만원, 계약금액 1,184백만원, 집행액 1,179백만원, 불용액 21백만원(계약금액과 집행액 차이는 용역기관의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반납처리됨)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최근 2년간 청년 종합 실태조사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은 시범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약금액 9,100만원에 약 8개월 기간 동안 진행하였지만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따라 8,700만원을 집행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은 본조사로 전년대 동일하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약금액 11억 8,400만원에 약 9개월 간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따라 11억 7,900만원으로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2022년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는 1,044만여 청년 모집단 중 1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300여 문항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응답자에게는 2만 5,000원 상당의 조사답례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인터넷·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경우 온라인을 활용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면 대면 면접 방식에 비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응답자에게 제공한 2만 5,000원 상당⁴⁾의 조사답례품의 경우 통계청 등 타 사업의 조사답례품 단가(2만원)에 비해 높은 물품을 지급하였는데, 조사답례품 예산의 경우에도 절감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2회계연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조사 단위를 살펴보면, 가구 표본(15,000명)과 가구 전수조사(22,580명) 중 가구 표본조사(15,000명)⁵⁾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자리·주거·교육·문화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및 도시·농촌 등 지역별 차이가 큰 청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신뢰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바람직하지만 조사단위(개인vs가구)와 가구정의(가구vs가족)에 따른 검토결과와 연계하여 해당 실태조사의 조사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타 실태조사와 비교]

(단위: 명, 가구, 백만원)

	청년 삶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모집단	10,441,503	7,394,115	51,422,507
표본수	15,000	10,000	20,000
공표범위	시·도	시·도	전국
주요항목	300여문항	186문항	166문항
자료수집	면접	면접	면접
조사주기	2년	3년	3년
예산액	1,000	910	1,80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4)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및 통계청 조사답례품 지급기준 및 단가를 준용하여 사회조사 표준 단가 적용

(단위: 원, 시)

조사 주기	통계명	지급 단가	투입 시간	필요 단가	난이도				표준 단가	적정 단가
					스트레스	조사별 영향요인	평균	상대 비교		
반기	지역별고용	5,000	0.99	8,267	7.82	7.40	7.44	115.2	9,526	10,000
연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	10,000	3.70	30,895	7.82	7.40	7.44	115.2	35,601	30,000
	사회조사	18,000	2.65	22,128	7.82	7.40	7.44	115.2	25,498	20,000
	가계금융복지	40,000	5.34	44,589	8.38	7.76	7.82	121.1	54,005	50,000

- 5) 표본조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집단 중 일부(표본)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로부터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 내는 것으로,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가. 현 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¹⁾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조직이다. 2021년 5월 대통령령에 근거²⁾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³⁾(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2022.3.25)에 따라 법정 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7억 8,900만원 중 4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7035-319

- 2)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4. 시행 ('22.3.25. 폐지)
- 제2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 제9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정책참여단 구성)
 - 제10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사무처 설치)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22.3.25 시행
-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 제2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2022회계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6,806	5,789	-	540 △540	5,789	4,399	122	1,268	5,724

주: 1.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5.29 출범하였으며,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 예산을 이체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분석의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 2022년에 2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약 5개월간 위원회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위원회 운영 중단에 따른 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⁴⁾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6명을 포함한 총 9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2021.10.~2022.10.)되었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국가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개편 방안을 마련⁵⁾하였고 2기 위원회 구성⁶⁾(민간위원 위촉)이 약 5개월간 지연(22.10월)

4)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황 : 민간위원 33명 포함한 총55명(22.10~'24.10)

5) 2021년 결산 예정위 지적사항(22.11.)

- (지적)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대폭 축소·개편하고 실질적인 역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조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를 축소하여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토록 조치완료
- * 개편내용: (민간위원) 기존 76명 → 現 32명, (분과위) 기존 8개 → 現 4개

6) 2기 위원회 구성 현황은 정부위원 22명, 민간위원 33명으로 총 55명이며 40명 감축으로 1기 대비 57.9% 수준

됨에 따라 2022년 4월말 부터 2022년 9월 중순까지 전체회의 및 총괄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 운영이 일시 중단⁷⁾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당초 계획(148회) 대비 실적(58회) 달성률이 38.9%로 나타났고,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의 집행률도 76.0%에 그쳤다.

[2022회계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집행 부진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

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사유
기타직 보수	526	198	328	37.6	◦ '22.6.30. 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 가급) 임기만료 후 후임자 채용 지연(2회 실시)에 따른 5개월 간 (7~11월) 공석으로 인한 보수 미지급 ◦ '22.4월 사무실 이전(서울→세종)에 따라 장거리 출퇴근 직원 증가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감소 등
일반 수용비	1,255	698	557	55.6	◦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2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22.10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일시 감소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검토비, 전문가 자문료 등 미집행 ◦ 탄소중립 시민회의 토론회 미개최로 토론회 참석수당 미지급
특근 매식비	64	14	50	22.0	◦ '22.4월 사무실 이전(서울→세종)에 따라 장거리 출퇴근 직원, 원격근무 직원 증가 등 사유로 초과근무 감소
국외 업무여비	120	59	61	49.2	◦ '22.12월 예정돼 있던 '탄소중립 정책 추진체계 사례 연구' 국외출장이 민간위원장의 일신상 사유로 갑자기 취소됨에 따름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대면회의 참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출장 인원 감소
합계	1,965	969	996	49.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집행률 부진 내역을 살펴보면, 전문임기제 채용 지연과 초과근무수당 감소를 원인으로 기타직 보수 세목의 집행률이 37.6%로 3억 2,8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위원회 2기 구성 지연과 활동 감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7)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소관 분과위원회는 중단없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55.6%로 5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원격근무 등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22% 집행하여 5,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외업무여비는 동 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일신상 사유로 인해 취소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인해 49.2% 집행하여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전반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여줌에 따라 2022회계연도 동 사업의 불용액 12억 6,800만원 중 위의 4개의 세목 불용액이 9억 9,600만원으로 78.5%를 차지한다. 집행률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는 2기 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제정 법률(「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25.))의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2기 위원회 구성 추진에 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위원회 운영 중단과 이에 따른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규제혁신추진단 운영¹⁾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²⁾ 제정(2022.7.20.시행)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규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단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일반예비비를 재원으로 추진되었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 2022년도 예비비 편성·집행 경과]

예비비 편성 경과
① 예비비 편성 관련 사전 협의(국조실⇄기재부) : '22. 6월 ~ 7월
② 예비비 적정성 내부심의 : 7.11(예산집행심의회)
③ 예비비 공식 요구 : '22. 7. 11
④ 국무회의 심의·의결 : '22. 7. 12
⑤ 예비비 편성결과 통보(기재부→국조실) : '22. 7.14
⑥ 예비비 배정 및 집행 : '22. 7. 1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은 업무에 능숙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민간 등 민·관·연의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2년에 예비비로 36억 3,200만원을 배정받아 이 중 28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7033-305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	-	3,632	3,632	2,861	220	551	5,630
규제혁신단 추진 운영	-	-	2,939	2,939	2,687	-	252	4,486
덩어리규제 발굴	-	-	300	300	83	171	46	401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	-	165	165	91	-	74	385
규제혁신추진단홍보	-	-	228	228	-	49	179	358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분석의견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연도 중 예비비를 편성·배정받아 추진되었으나, 홍보 예산의 경우에는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고, 덩어리규제 발굴을 위한 사업비도 예산액의 57%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예비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의 집행현황을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규제혁신단 추진운영 내역사업은 추진단 전문위원 중 전직공무원(8명)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미집행(1억 1,600만원)과 자산취득비, 공사비, 낙찰차액 등(1억 3,600만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였다.

② 덩어리 규제발굴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3억원 중 8,300만원을 집행하여 27.7%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2022년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의 덩어리 규제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부문에서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효과가 보다 신속하게 창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하위 평가 결과인 부진을 받았다.

[2022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집행 부진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
①규제혁신단 추진 운영	2,939	2,687	252	91.4	- 추진단원 결원 발생 등으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미집행(116백만원) - 자산취득비(75백만원), 공사비(6백만원), 낙찰차액 등 (55백만원)발생
②덩어리규제 발굴	300	83	46	27.7	- 추진단 설립(22.8) 이후 덩어리 규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이 '22.10~11월 마무리됨에 따라 과업기간이 부족하여 정책연구비(171백만원) 차년도로 이월
③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165	91	74	55.2	- 추진단 설립(22.8) 이후 덩어리 규제 발굴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집행 기간 부족
④규제혁신 추진단 홍보	228	-	179	-	- 덩어리 규제 특성상 개선방안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개선과제에 대한 홍보는 '23년 본격 추진될 예정 - 홈페이지 구축비(49백만원) 차년도 이월
합 계	3,632	2,861	551	78.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③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내역사업은 동 사업의 설립(22.8.)이후 덩어리 규제 발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및 조정 등을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 예산현액 1억 6,500만원 중 9,1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은 전부 불용하였다.

④ 규제혁신 추진단 홍보 내역사업은 2022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였고 홈페이지 구축을 이유로 4,9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7,900만원 불용하였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예비비 집행 시에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④ 규제혁신 추진단 홍보 내역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 2억 2,8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였고, 홈페이지 구축비³⁾ 4,900만원을 이월한 것은 이러한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② 덩어리 규제발굴 내역사업⁴⁾의 경우에도 예산액(3억원)의 57%에 해당하는 1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바 마찬가지로 「집행지침」에 어긋난 집행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예비비 편성·집행 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내역사업의 홈페이지 구축비 4,900만원은 신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경쟁입찰 등을 거쳐 '22.12월 계약체결 하였으나, 용역수행 기간 확보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월('23. 5월 집행 완료)

4) 덩어리 규제 발굴 내역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7,100만원은 용역대상 과제선정을 '22.10월 완료하고, 11~12월 계약체결하였으나, 용역수행 기간 확보가 필요해 다음연도로 이월('23.5월 집행 완료)

가. 현 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운영하는 14개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위원회¹⁾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고,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 관련 심의·조정·협의하는 등²⁾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심의위원회도 포함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행정위원회(4), 자문위원회(8), 심의위원회(2)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소속	위원회명	성격	관련 법령	기능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3.1)	규제정책 기본방향, 신설·강화 규제심사 등 심의·조정
국무총리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희생자추모위원회	자문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5.3.29)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행정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2010.1.25..)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2019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 p.6.

소속	위원회명	성격	관련 법령	기능
국무총리	새만금위원회	자문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국무총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08.12.14)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종합·조정 등
국무총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자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2001.1.2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지정취소, 기반시설 보호 정책 수립·조정 등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2006.4.1)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등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2006.2.21)	제주특별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제주자치도의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미세먼지 중요사항 심의 및 정부·자자체 정책 조정·지원
국무총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행정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3조(2020.4.1.)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심의·의결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청년기본법」 제13조(2020.8.5.)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의심·조정
대통령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3.2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
국무총리	시민사회위원회	자문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20.5.25)	시민사회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등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운영하는 14개 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의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16억 3,900만원 중 19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3,700만원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14개 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행정)	1,059	1,051	-	-	1,051	1,011	-	40	1,531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¹⁾ (자문)	162	162	-	-	162	130	-	32	16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ODA)	2,254	2,187	-	11 △11	2,187	2,052	21	114	2,870
위원회 운영(행정)	287	282	-	-	282	275	-	7	284
새만금사업추진단 운영(자문)	171		-	-	171	159	-	12	163
세종시지원단 운영 ²⁾ (심의)	314	314	-	-	314	264	-	50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자문)	208	208	-	-	208	196	-	12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³⁾ (자문)	-	-	-	-	-	-	-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행정)	3,242	3,238	-	-	3,238	3,230	-	8	3,41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운영 ⁴⁾ (심의)	138	138			138	126		1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자문)	551	551	-	-	551	442	-	109	543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행정)	3,097	3,097	4,130	226 △226	7,227	7,169	-	58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자문)	182	178	-	-	178	184	-	-	19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자문)	6,806	5,789		540	5,789	4,399	122	1,268	5,724
시민사회위원회(자문)	143	143	-	-	143	128	-	15	143
합 계	18,614	17,338	4,130	777	21,639	19,765	143	1,737	15,033

주: 1)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위원회 운영과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비를 구분하기 어려움 →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으로 기재

2) 세종시지원단 운영 2023년 예산 없음(다만,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중 세종특별자치시지원 부분 122 백만원)

3)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민간위원이 없는 정부 간 협의체 성격으로,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운영 2023년 예산 없음(다만,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 부분 92백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분석의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4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운영 실적(개최 횟수) 및 위원별(민간위원, 정부위원) 참여 횟수를 검토하여 14개 위원회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4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 실적이 저조(개최 횟수)하거나 정부위원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는 정부위원 참석률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위원회별 운영 실적]

(단위: 회, 건, 명, %)

구분	운영 횟수	안건	위원정수 (A)		참석 횟수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¹⁾	40	82	11.9	7	9.3	4.8	78.2	68.6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1	1	9	9	9	8	100.0	89.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4	15	12	16	11.3	15.3	94.2	95.6
새만금위원회	2	4	15	14	15	14	100.0	100.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²⁾	2	5	10	17	9	16.5	90.0	97.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³⁾	1	1	10	10	10	10	100.0	100.0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⁴⁾	1	1	-	21	-	21	-	100.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9	37	11	4	10	1.7	91.0	42.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3	4	8	20	8	20	100.0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⁵⁾	3	3	18	18	14.3	11	79.4	61.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22	56	4.5	4.1	4.2	3.4	93.3	82.9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11	20	20	15	14	75.0	7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	3	33	22	31.5	21.5	95.5	97.7
시민사회위원회 ⁶⁾	1	3	26	9	22	8	84.6	88.9
합 계	94	226	13.5	13.7	12	12.1	89.5	88.5

주: 1) 분과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9명), 경제2분과위원회(9명), 행정사회분과위원회(8명)(’22.12월말 기준)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 실무위원회(22명)

3) 농산물 분과위원회(15명), 축산물 분과위원회(15명), 수산물 분과위원회(15명), 가공·수입식품 분과위원회(15명), 소비·영양안전 분과위원회(15명)

4)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없고 당연직 정부원 21명으로 구성, 분과위원회 : 공공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21명),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8명)

5) 본회의 외에도 민간위원 전체회의(18명), 분과장 협의회(4명), 공공(6명) / 민간(6명) / 생활(5명) 분과위원회 회의체 존재

6) ’20.5.25. 설치, ’22.10.4. 법령 폐지

1. 2022회계연도 평균 위원정수, 평균 참석횟수 적용하여 참석률 산출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위원회별 운영 실적을 살펴 보면, 14개 위원회의 운영 횟수는 총 94회로 규제개혁위원회(40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2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9회)를 운영한 것에 비해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안전 1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안전 1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안전 1건), 시민사회위원회(안전 3건)는 위원회를 각각 1회만 운영하였다.

또한, 2022회계연도 위원회 운영 시 안전이 5개 미만인 위원회를 살펴보면,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1건), 식품안전정책위원회(1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4건), 미세먼지특별자치위원회(3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3건), 시민사회위원회(3건)이다.

해당 위원회의 안전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1회 운영한 3개 위원회는 각각 1개의 안전을 상정하였고,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서면으로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운영계획”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서면으로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도 서면으로 “주요기반시설 신규지정·지정취소”, “기반시설 보호계획”, “민간분야 기반시설 지정 TF 운영 등”을 모두 서면방식으로 의결하였다.

시민사회위원회는 1번의 위원회 운영 시 서면으로 3건³⁾의 안전을 상정·의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3번의 위원회 운영 시 모두 서면 방식으로 4건⁴⁾의 안전을 상정·의결하였으며, 미세먼지특별자치위원회는 3회 위원회 운영 시 1번은 서면으로, 2번은 대면으로 진행하여 각각 1회 1건의 안전을 처리⁵⁾하였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회 운영 시 서면과 대면 각 1번씩 1건의 안전과 2개의 안전을 처리⁶⁾하였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들은 운영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서

3) 시민사회위원회 :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안(서면), 비영리법인 총회제도 개선안(서면), 제4기 시민위 백서발간계획안(서면)

4)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서면),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서면),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서면)

5) 미세먼지특별자치위원회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서면), 종합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대면), 제4차 계절관리제에 관한 사항(대면)

6)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서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안)(대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안)(대면)

면방식을 채택하여 안전을 상정·의결하였다.

저조한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후 9년이 지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많은 부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다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그간 연 2회 개최하였으나, 22년 상반기에 본회의 1회 개최 후 정부위원회 폐지대상으로 결정('22.9)에 따라 더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위원회의 주목적이 연간 계획 수립, 실적점검으로 연 1회 내외로 개최하고, 정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폐지 후 협의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시민사회위원회는 그간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하였으나, 22년 상반기에 본회의 1회 개최 후 정부위원회 폐지대상으로 결정('22.7)되어 2022회계연도에 위원회 운영을 1회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위원별 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위원(당연직)의 참여 실적이 70% 미만인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68.6%), 정부업무평가위원회(42.5%),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61.1%)이고 반면, 민간위원 참여 실적이 70% 미만으로 운영한 위원회는 없다.

특히,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부업무기본법」 제10조제4항⁷⁾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두어 관리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의 참석률 부진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위원회 정비방안('22.9.)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하였다.

7) 「정부업무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폐지·통합하는 정비 대상 위원회 목록]

주관 부처	정비 수	통·폐합	정비 대상 목록
국조실	6	통합(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폐지(5)	시민사회위원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9.7.

이와 같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4개 위원회 중 행정안전부의 「정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6개의 위원회 통합·폐지를 추진하였지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경우, 폐지 결정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고 당초 위원 임기 만료 및 위원회 업무 종료('22.11)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국외 입국자 피해구제 신청(2명, '23.1~2)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23.3)하면서 2기 활동을 재개('23.4~)하였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⁸⁾ 제11조가 개정('23.5.16.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신설 시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일몰제 도입 및 해당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간 연장 시 2년마다 존속 여부 점검 등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4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 실적과 정부위원 참여 실적, 회의 방식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3억 400만원이며, 120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3.0%인 63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54억 9,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5,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198	9,198	9,198	11,867	6,227	5,484	156	5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	61	61	57	45	9	3	98.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5	45	45	109	109	-	-	100.0
합계	9,304	9,304	9,304	12,033	6,381	5,493	159	53.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7,606억 4,600만원이며, 이 중 98.3%인 5조 6,630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342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3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724,036	5,722,585	5,741,416	5,649,680	34,261	57,475	98.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990	16,990	16,990	11,130	-	5,860	65.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40	2,240	2,240	2,240	-	-	100.0
합계	5,743,266	5,741,815	5,760,646	5,663,050	34,261	63,335	98.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8,201억 1,500만원이며, 6,908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3%인 6,720억 1,800만원을 수납하고 185억 6,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억 2,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682,307	682,307	682,307	437,798	419,008	18,562	228	95.7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37,808	137,808	137,808	253,014	253,010	4	-	100.0
합계	820,115	820,115	820,115	690,812	672,018	18,566	228	97.3

자료: 국가보훈부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8,201억 1,500만원이며, 이 중 81.9%인 6,720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682,307	682,307	682,307	419,008	-	9,883	61.4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37,808	137,808	137,808	253,010	-	399	183.6
합계	820,115	820,115	820,115	672,018	-	10,282	81.9

자료: 국가보훈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246억 1,600만원(54.6%)이 감소한 1,035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4억 7,200만원(13.7%)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139	9,304	9,304	6,381	△2,923	2,242
기금	86,954	218,877	218,877	97,184	△121,693	10,230
합계	91,093	228,181	228,181	103,565	△124,616	12,47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31억 9,900만원(1.2%)이 감소한 5조 8,005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1억 1,900만원(0.02%)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566,777	5,654,418	5,652,967	5,574,202	△78,765	7,425
기금	234,863	220,753	220,753	226,319	5,566	△8,544
합계	5,801,640	5,875,171	5,873,720	5,800,521	△73,199	△1,11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보훈부의 자산은 2조 2,408억 5,400만원, 부채는 587억 6,3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1,820억 9,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608억 8,700만원, 투자자산 1,824억 4,000만원, 일반유형자산 1조 7,778억 6,700만원, 무형자산 143억 2,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37억 4,100만원(1.9%) 감소하였다. 이는 투자자산 528억 5,500만원 감소, 유동자산 52억 9,7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8억 6,900만원, 장기충당부채 24억 3,4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14억 6,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9억 2,000만원(4.7%)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부채 34억 5백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A)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240,854	2,284,595	△43,741	△1.9
Ⅰ. 유동자산	260,887	266,184	△5,297	△2.0
Ⅱ. 투자자산	182,440	235,295	△52,855	△22.5
Ⅲ. 일반유형자산	1,777,867	1,767,653	10,214	0.6
Ⅳ. 무형자산	14,329	8,010	6,319	78.9
Ⅴ. 기타비유동자산	5,331	7,453	△2,122	△28.5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부 채	58,763	61,683	△2,920	△4.7
Ⅰ. 유동부채	4,869	8,274	△3,405	△41.2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2,434	1,949	485	24.9
Ⅳ. 기타비유동부채	51,461	51,461	-	-
순 자 산	2,182,090	2,222,912	△40,822	△1.8
Ⅰ. 기본순자산	848,492	848,49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47,827	653,881	△6,054	△0.9
Ⅲ. 순자산 조정	685,771	720,539	△34,768	△4.8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 5조 6,788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5조 6,380억 5,500만원, 관리운영비 1,383억 9,100만원, 비배분비용 16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53억 2,000만원, 비배분수익 392억 5,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47억 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00억 6,200만원 증가한 5조 7,035억 3,7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부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프로그램 4조 5,338억 2,600만원과 보훈의료복지 7,482억 6,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47억 6,400만원과 경비 436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500만원과 복리후생비 3,100만원, 기타비용 16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A)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602,735	5,612,844	△10,109	△0.2
가. 프로그램 총원가	5,638,055	5,650,313	△12,258	△0.2
나. 프로그램 수익	35,320	37,469	△2,149	△5.7
Ⅱ. 관리운영비	138,391	140,752	△2,361	△1.7
Ⅲ. 비배분비용	1,660	7,539	△5,879	△78.0
Ⅳ. 비배분수익	39,250	77,661	△38,411	△49.5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703,537	5,683,475	20,062	0.4
Ⅵ. 비교환수익 등	24,706	46,559	△21,853	△46.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678,831	5,636,916	41,915	0.7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조 2,229억 1,200만원이고, 기말순 자산은 2조 1,820억 9,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08억 2,200만원(1.8%)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419억 1,5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2,543억 200만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51억 4,2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5조 6,792억 6,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4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71억 6,1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76억 8,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222,912	1,982,658	240,254	12.1
Ⅱ. 재정운영결과	5,678,831	5,636,916	41,915	0.7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672,777	5,657,635	15,142	0.3
Ⅳ. 조정항목	△34,768	219,534	△254,302	△115.8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182,090	2,222,912	△40,822	△1.8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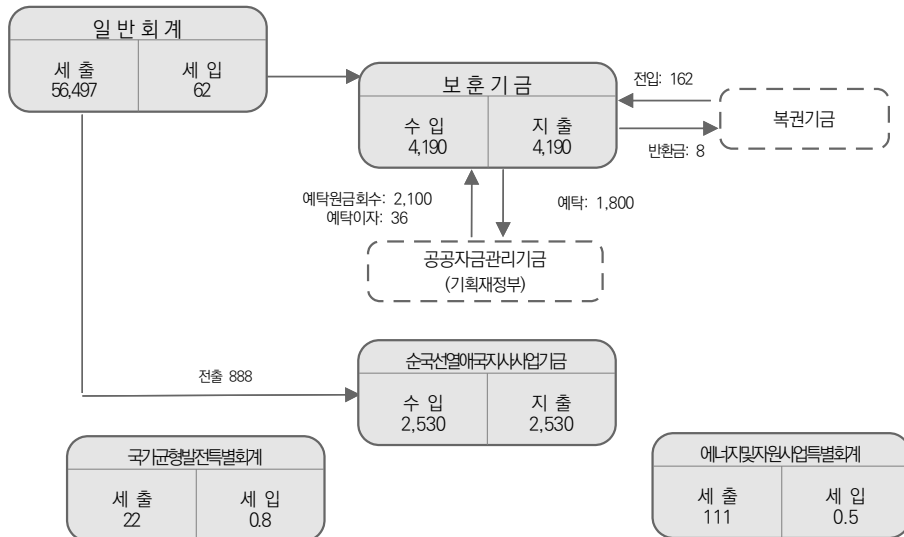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888억원, 복권기금에서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사업을 위하여 보훈기금으로 162억원 전출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보훈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사업**, ③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업**이 있다.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6억 8,800만원이 감액(38억 7,500만원→31억 8,700만원)되었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사업은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3억 7,500만원이 감액(105억 5,800만원→101억 8,300만원)되었고,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업은 집행액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7억 9,300만원이 감액(169억 6,700만원→161억 7,4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참전명예수당 사업**, ② **지방보훈회관건립 사업**, ③ **기념관관리운영 사업** 등이 있다.

참전명예수당 사업은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173억 7,100만원이 증액(5,914억 2,300만원→6,087억 9,400만원)되었고,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함평, 성주 보훈회관 등 5개소 추가 건립 지원을 위하여 11억 500만원이 증액(15억원→26억 500만원) 되었으며, 기념관관리운영 사업은 기념관 활성화비 11억 3,400만원(62억 4,000만원→7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다.²⁾

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국가보훈부는 ①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 보훈병원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재활 복지서비스 사업 확대, ③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사업 추진, ④ 중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2년도에 추진한 4개 국립호국원의 확충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공사비 이월이 발생(공사비의 63.5%)하였는데, 국립호국원의 80세 이상 생존 안장대상자 수는 잔여기수를 초과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추가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2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은 당초 상반기에 지정 절차를 마치고 7월경부터 진료를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모집절차 지연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연도 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진료비 예산이 불용되고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국립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이다.

현재 6개의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괴산·산청·제주)이 운영 중이며,¹⁾ 2022년도에 6개 국립호국원 사업²⁾은 예산현액 733억 7,700만원 중 396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98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5,500만 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국립호국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영천호국원	15,985	15,985	659	40	16,684	5,638	9,898	1,148	5,492
임실호국원	11,421	11,421	419	-	11,840	4,496	6,798	546	4,155
이천호국원	17,451	17,451	10,264	80	27,795	15,686	11,540	569	13,912
산청호국원	2,380	2,380	-	-	2,380	2,298	-	82	336
괴산호국원	11,542	11,542	-	△500	11,042	8,089	1,583	1,369	5,451
제주호국원	3,756	3,756	-	△120	3,636	3,395	-	241	3,332
합 계	62,535	62,535	11,342	△500	73,377	39,602	29,819	3,955	32,678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조성사업이 2023년도부터 추진되어 2028년 개원 예정에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3250-358, 3250-359, 3250-360, 3250-361, 3250-363, 3250-367

나. 분석의견

2022년도에 추진한 4개 국립호국원의 확충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공사비 이월이 발생(공사비의 63.5%)하였는데, 국립호국원의 80세 이상 생존 안장대상자 수는 잔여기수를 초과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추가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에 국가보훈부는 4개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괴산)의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³⁾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현재 안장능력	봉안시설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충 안장규모
영천호국원	52,530	봉안당	359	2021~2024	2.5만기
임실호국원	36,952	봉안당	229	2020~2024	2만기
이천호국원	50,002	봉안당	713	2018~2024	5만기
괴산호국원	20,846	봉안당, 자연장	160	2021~2024	2.3만기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2년도에 추진 중인 4개 국립호국원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 규모의 공사비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국립영천호국원 확충사업은 공사비 예산현액 111억 8,500만원 중 98억 1,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국립임실호국원 확충사업의 경우 공사비 예산현액 60억 400만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공사비(94억 5,900만원)를 포함한 공사비 예산현액 201억 5,100만원 중 106억 8,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전년도 이월 공사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106억 9,200만원 중 집행액은 800만원에 불과하다. 국립괴산호국원 확충사업의 경우 67억 8,900만원의 공사비 중 15억 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3)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다.

[2022회계연도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영천호국원	12,480	12,480	659	-	13,139	2,148	9,989	1,057	16.3
건설보상비	-	-	-	408	408	408	-	-	100
기본조사설계비	-	-	250	-	250	250	-	-	100
실시설계비	530	530	409	-	939	511	74	354	54.4
공사비	11,140	11,140	-	45	11,185	671	9,811	703	6.0
감리비	786	786	△453	-	333	333	-	-	100
시설부대비	24	24	-	-	24	11	13	-	45.8
임실호국원	7,938	7,938	419	-	8,357	1,270	6,798	288	15.2
건설보상비	65	65	62	-	127	82	-	46	64.6
기본조사설계비	-	-	357	-	357	357	-	-	100
실시설계비	944	944	-	-	944	701	-	243	74.3
공사비	6,432	6,432	-	△428	6,004	-	6,004	-	0
감리비	359	359	-	428	787	82	705	-	10.4
시설부대비	138	138	-	-	138	48	90	-	34.8
이천호국원	15,592	15,592	10,264	-	25,856	13,760	11,540	556	53.2
건설보상비	-	-	-	3,626	3,626	3,626	-	-	100
기본조사설계비	-	-	-	-	-	-	-	-	-
실시설계비	-	-	-	382	382	381	-	1	99.7
공사비	14,764	14,764	9,459	△4,072	20,151 10,692 ¹⁾	8,912 8 ¹⁾	10,684	555	44.2 0.07
감리비	808	808	794	-	1,602	794	808	-	49.6
시설부대비	20	20	11	64	95	47	48	-	49.5
괴산호국원	7,324	7,324	-	177	7,501	4,628	1,583	1,289	61.7
건설보상비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	-	-	-	-	-	-	-	-
실시설계비	-	-	-	-	-	-	-	-	-
공사비	6,811	6,811	-	△22	6,789	4,132	1,523	1,134	60.9
감리비	464	464	-	199	663	475	60	127	71.6
시설부대비	49	49	-	-	49	21	27	-	42.9

주: 1)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및 집행액

1.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영천호국원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청 등 관련기관 협의 일정이 지연되었으며,⁴⁾ 2023년 4월 18일 인·허가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확충사업 본공사 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립임실호국원의 경우 2021년도에 우수한 건축물 신축과 창의성 및 예술성 등을 고려한 보다 나은 설계를 위해 설계용역 계약방식을 일반경쟁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설계 착수가 당초 계획인 2021년 10월보다 지연되어 2022년 1월에 확충사업 설계 착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본공사 계약이 2022년 12월말경 이루어져 2023년 2월 27일 착공하였다.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인허가(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일정 지연⁵⁾과 계약방식 변경을 위한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 경우(2021.11~12월)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2021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7월 공사계약이 이루어져 8월 15일 착공하였으며, 국립괴산호국원의 경우 2022년 4월 공사 착공 후 현장 암반 발견, 화물노조파업으로 콘크리트 수급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5개월 연장된 상태이다.

이들 국립호국원 확충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2023년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모두 1년이 연장된 상태로 2023년 5월말 기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국립괴산호국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이월분을 제외한 2022년도 편성 공사비 예산 집행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바, 준공시기가 2025년도 이후까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립영천호국원의 경우 본공사는 공사기간이 1년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022년 12월 중순 착공한 전기·소방·통신 등 부대공사는 2년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국립임실호국원의 경우 준공시기를 2024년 9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단 등 통상적인 지연 요인에 일부 추가적인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준공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 이후

4) 조달청 등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2021.12.1.~2022.1.26., 2개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022.3.30.~2022.8.10., 5개월), 실시서류제 적정성 검토(2022.10.5.~2023.2.9., 5개월)

5) 교통영향평가 2021.6월 완료, 환경영향평가 2021.8월 완료, 재해영향평가 2021.12월 완료

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까지 상당 규모의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이월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개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 현황(2023년도 이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국립영천호국원	합 계	5,492	16,399
	건설보상비	-	-
	설계비	-	-
	공사비	4,310	15,266
	감리비	1,164	1,113
	시설부대비	18	20
국립임실호국원	합 계	4,155	9,754
	건설보상비	-	-
	설계비	-	-
	공사비	3,859	9,079
	감리비	215	498
	시설부대비	81	177
국립이천호국원	합 계	13,912	15,872
	건설보상비	-	-
	설계비	642	-
	공사비	12,627	14,587
	감리비	626	1,285
	시설부대비	17	-
국립괴산호국원	합 계	5,451	2,744
	건설보상비	-	-
	설계비	-	-
	공사비	4,640	2,171
	감리비	778	557
	시설부대비	33	16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호국원의 안장현황과 안장대상자를 살펴보면, 2023년 4월말 기준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80세 이상의 생존 안장대상자 수가 현재 국립호국원의 잔여기수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봉안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안장현황]

(단위: 명, 기)

구분	생존 안장대상자		안장현황			과부족	
	전체 (A)	80세이상 (C)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B)	(B-A)	(B-C)
현충원	174,313	27,223	257,503	184,716	72,787	△101,526	45,564
호국원	183,191	55,118	180,338	163,866	16,472	△166,719	△38,646
민주묘지	3,900	555	3,220	1,521	1,699	△2,201	1,144
합 계	361,404	82,896	441,113	350,155	90,958	△270,446	8,062

자료: 국가보훈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현황 및 잔여기수 등 시설 현황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안장시설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국립호국원 확충사업이 추가적인 지연 없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위탁병원 진료 사업¹⁾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 상이자 등의 근접 진료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고, 감면된 진료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2,525억 5,600만원으로, 2,49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위탁병원 진료	252,556	252,556	-	-	252,556	249,484	-	3,072	267,441
위탁병원진료비	250,404	250,404	-	-	250,404	247,332	-	3,072	265,04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은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종합병원급 87개, 병원급 160개, 의원급 358개 등 605개가 지정되어 있다.

[위탁병원 지정 현황]

(단위: 개)

사업명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종합병원	87	1	6	21	9	-	3	8	3	-	10	6	-	8	-	7	5	-
병원	160	15	3	25	11	8	2	23	4	1	18	9	2	19	2	8	10	0
의원	358	61	6	44	25	26	8	25	6	8	33	24	18	30	12	18	10	4
합계	605	77	15	90	45	34	13	56	13	9	61	39	20	57	14	33	25	4

자료: 국가보훈부

민정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2150-366

나. 분석의견

2022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은 당초 상반기에 지정 절차를 마치고 7월경부터 진료를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모집절차 지연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연도 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진료비 예산이 불용되고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근접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도부터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서,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0개 정도의 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도에는 의원급 위탁병원 120개 확대를 예정하고 120개 신규 위탁병원에 대한 진료비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 2월 공모절차에 들어가 6월 중 계약 체결을 마치고, 7월경부터 진료를 개시한다는 일정에 따라 6개월분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2년 신규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 편성 내역]

$$\begin{aligned} & 2022\text{년 신규 지정 병원수}(120\text{개}) \times \text{의원급 연간 진료비 평균 단가}(3,400\text{만원}) \\ & \times 6/12\text{개월} = 20\text{억 } 4,000\text{만원} \end{aligned}$$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2022년도 위탁병원 지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에 따라 지정된 병원은 119개인데, 이 중 대부분의 병원은 연도 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못하여 2022년도에 진료를 개시한 병원은 23개이고, 연도 내에 진료를 개시한 병원의 경우에도 모두 연도말에 진료를 개시한(11월 1개소, 12월 22개소)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추진 현황]

(단위: 개)

보훈 (지)청	모집기간	모집 병원 수	지정 병원 수	계약체결	진료개시	비고 (특이사항)
서울	'22. 8월 ~ '23. 1월(4회)	13	12	'22.12월(1) '23. 1월(4) '23. 3월(2)	'23. 1월(1) '23. 2월(4) '23. 4월(2)	5개소 계약준비중
서울남부	'22. 8월 ~ 11월(5회)	8	6	'23. 1월(1) '23. 2월(5)	'23. 3월(6)	-
서울북부	'22. 8월 ~ 11월(3회)	7	7	'22.12월(1) '23. 1월(5) '23. 3월(1)	'23. 1월(1) '23. 2월(5) '23. 4월(1)	-
경기남부	'22. 7월 ~ 9월(2회)	7	6	'22.12월(5) '23. 1월(1)	'23. 1월(5) '23. 2월(1)	-
인천	'22. 8월 ~ 9월(2회)	3	3	'22.11월(1) '22.12월(2)	'22.12월(1) '23. 1월(2)	-
경기북부	'22. 7월 ~ '23. 5월(6회)	10	5	'23. 2월(4)	'23. 3월(4)	1개소 계약 진행중 4개소 지정 진행중
경기동부	'22. 8월 ~ '23. 3월(5회)	8	4	'22.12월(3) '23. 5월(1)	'23. 1월(3) '23. 6월(1)	-
강원서부	'22. 7월 ~ 7월(1회)	2	2	'22.12월(2)	'23. 1월(2)	-
강원동부	'22. 8월 ~ 9월(2회)	2	2	'23. 1월(2)	'23. 2월(2)	-
부산	'22. 7월 ~ '23. 4월(9회)	21	13	'22.11월(3) '22.12월(6) '23. 2월(2) '23. 3월(2)	'23. 1월(9) '23. 4월(4)	-
울산	'22. 8월 ~ 12월(11회)	11	6	'22.12월(3) '23. 1월(1) '23. 3월(2)	'23. 1월(2) '23. 2월(1) '23. 4월(2)	1개소 진료준비중
경남동부	'22. 8월 ~ '23. 2월(2회)	5	5	'22.11월(2) '22.12월(1) '23. 4월(2)	'22.12월(2) '23. 1월(1) '23. 5월(2)	-
경남서부	'22. 8월 ~ 11월(6회)	5	2	'22.11월(2)	'22.12월(2)	-
대전	'22. 7월 ~ 12월(5회)	10	8	'23. 1월(7) '23. 3월(1)	'23. 1월(7) '23. 3월(1)	-
충남동부	'22. 7월 ~ 11월(8회)	4	2	'22.11월(2)	'22.12월(2)	-
충남서부	'22. 2월 ~ 11월(11회)	4	1	'23. 1월(1)	'23.2월(1)	-
충북남부	'22. 7월 ~ 8월(1회)	1	1	'22.10월(1)	'22.12월(1)	-

(단위: 개)

보훈 (지)청	모집기간	모집 병원 수	지정 병원 수	계약체결	진료개시	비고 (특이사항)
충북북부	'22. 8월 ~ 9월(2회)	2	-	-	-	-
대구	'22. 7월 ~ 10월(4회)	16	13	'22.11월(4) '22.12월(9)	'22.12월(3) '23. 1월(10)	-
경북북부	'22. 8월 ~ 8월(1회)	1	1	'22.10월(1)	'22.12월(1)	-
경북남부	'22. 7월 ~ 10월(3회)	3	3	'22.10월(1) '22.12월(2)	'22.12월(1) '23. 1월(2)	-
광주	'22. 7월 ~ 9월(2회)	7	6	'22.11월(5) '22.12월(1)	'22.12월(5) '23. 1월(1)	-
전남동부	'22. 8월 ~ 10월(2회)	3	3	'22.10월(2) '22.11월(1)	'22.12월(2) '23. 1월(1)	-
전남서부	'22. 7월 ~ 7월(2회)	2	2	'22.11월(2)	'22.12월(2)	-
전북동부	'22. 8월 ~ 12월(3회)	3	3	'22.10월(1) '22.11월(1) '23. 1월(1)	'22.12월(1) '23. 1월(1) '23. 3월(1)	-
전북서부	'22. 9월 ~ 10월(3회)	10	2	'23. 2월(2)	'23. 3월(2)	-
제주	'22. 7월 ~ 8월(1회)	1	1	'22.10월(1)	'22.11월(1)	-
합 계		169	119	-	-	-

주: 2023년 6월 현재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위탁병원 공개모집 절차가 지연된 데 기인한 것으로, 2022년도에 신규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로 편성된 진료비 예산은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보이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라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2023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에 따른 진료비 예산은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4분기에 진료를 개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해당 소요액을 산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추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탁병원 지정 확대를 위한 공개모집 등 제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부기념행사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10개 정부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사업¹⁾으로, 보훈기념행사 사업²⁾의 내역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23억 7,1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정부기념행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보훈기념행사	3,151	3,151	-	252	3,403	3,340	-	63	3,756
정부기념행사	2,119	2,119	-	252	2,371	2,371	-	-	2,42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정부기념행사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 예산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념행사별로 예산액과 집행액 간의 차이가 크거나 연도별 재원 투입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사추진 방식과 규모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기념행사별로 일정한 사업추진 체계와 소요 재원 규모를 설정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특이 소요는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2년도에 정부기념행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본예산 21억 1,900만원 대비 12% 수준인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2·28민주운동기념행사(2.28), 3·8민주의거기념행사(3.8), 3·15의거기념행사(3.15),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행사(4.11), 4·19혁명기념행사(4.19),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5.18), 현충일추념행사(6.6), 6·10만세운동기념행사(6.10),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11.3), 순국선열의날기념행사(11.17)

2) 코드: 일반회계 3147-411

[2022회계연도 정부기념행사 사업으로의 예산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감액사업		금액	증액사업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내역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현충시설건립 (3146-405)	420-03 (공사비)	215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3147-411)	210-01 (일반수용비)
전용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3147-413)	220-02 (국외여비)	8		
내역 변경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3147-413)	210-01 (일반수용비)	29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보훈부는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물가 등 기본적 인상요인과 더불어 행사·문화 콘텐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정부기념행사 예산이 부족하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5년 간 정부기념행사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던 2020년도를 제외하고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 예산조정을 통하여 정부기념행사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2022회계연도 정부기념행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1,423	1,423	-	640	-	2,063	2,052	-	11
2019	2,697	2,697	-	68	-	2,765	2,763	-	2
2020	4,040	3,760	-	△150	-	3,610	3,479	-	131
2021	2,119	2,119	-	268	-	2,387	2,251	-	136
2022	2,119	2,119	-	252	-	2,371	2,371	-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보훈부는 매년 사전 수립된 행사별 예산집행 계획을 바탕으로 상하반기 일괄조달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빈 확정 여부와 외부 여건(기후, 참석규모 변동, 방송사정 등)에 따른 기념식장·프로그램의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예산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전용 등 예산의 조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행사 사업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기념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조정을 통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각 정부기념행사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사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 기념행사는 3·8민주의거 기념식, 6·10만세운동 기념식 정도이고, 나머지 기념행사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 간의 차이가 크거나 연도별로 재원투입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³⁾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2021~2022년도 정부기념행사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28민주운동 기념식	170	223	170	188
3·8민주의거 기념식	170	162	170	186
3·15의거 기념식	200	178	200	219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37	248	137	257
4·19혁명 기념식	170	185	170	217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263	247	263	341
현충일 추념식	472	362	472	447
6·10만세운동 기념식	205	194	205	200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170	224	170	15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37	213	137	151
기념식 설문조사	25	15	25	15
합 계	2,119	2,251	2,119	2,371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사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기념행사별로 일정한 사업추진 체계와 소요 재원 규모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하되, 특히 소요는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국가보훈부의 설명과 달리 학생독립운동 기념식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의 경우와 같이 2021년도에 비해 투입재원의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된 행사도 존재한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선정 시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가. 현 황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¹⁾은 보훈단체의 사무실 공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친목 도모와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인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26억 500만원 중 2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보훈회관 건립	2,605	2,605	-	-	2,605	2,250	-	355	3,34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3년 1월말 기준 지방보훈회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229개 등 총 246개가 운영 중이다.

[지방보훈회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합계	시·도 보훈회관(지부)				시·군·구 보훈회관(지회)			
		소계	30년 이상	30년 미만	미확보 ¹⁾	소계	30년 이상	30년 미만	미확보 ¹⁾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69	3	2	1	-	66	4	54	8
강원권	19	1	-	1	-	18	2	16	-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76	5	-	5	-	71	16	53	2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	35	4	1	3	-	31	3	28	-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238-321

(단위: 개)

구 분	합계	시·도 보훈회관(지부)				시·군·구 보훈회관(지회)			
		소계	30년 이상	30년 미만	미확보 ¹⁾	소계	30년 이상	30년 미만	미확보 ¹⁾
호남권 (광주, 전라남·북도)	44	3	-	3	-	41	6	27	8
제주권	3	1	1	-	-	2	1	1	-
합 계	246	17	4	13	-	229	32	179	18

주: 1) 통합된 단독보훈회관이 없이, 다른 용도의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일부 단체만 입주해 있거나, 개인 소유 건물에 유·무상 임차로 입주해 있는 경우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2022년도에 추진된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중 보훈단체의 반대,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지방자치단체와 보훈단체 간 이견 등으로 건립을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에 추진된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총 12개이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액 22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1,500만원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31억 6,500만원 중 16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1,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22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포항시 (‘20~’21)	2020	250	250	0	250	0	건립부지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 지연 '22.3. 착공, '23.4. 준공 예정
	2021	250	500	248	252	49.6	
	2022	-	(252)	252	0	100.0	
장흥군 (‘20~’21)	2020	250	250	0	250	0	당초 계획 대비 건립규모 확대 로 지방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 추가 '21.12. 착공, '23.4. 준 공 예정
	2021	250	500	168	332	33.6	
	2022	-	(332)	332	0	100.0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태백시 (‘20~’21)	2020	250	250	63	187	25.2	코로나19 관련 예산 투입 등으로 지방비(도비) 지연 확보로 설계용역 지연(‘21.6. 착공, ’22.10. 준공)
	2021	250	437	348	89	79.6	
	2022	-	(89)	89	0	100.0	
동두천시 (‘21~’22)	2021	250	250	250	0	100.0	-
	2022	250	250	250	0	100.0	
보령시 (‘21~’22)	2021	250	250	8	242	3.2	단체 소유건물의 지자체 기부채납 관련 단체 간 이견, 지자체와 단체 간 기본설계 협의지연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지연, 공사착공 예정(‘23.4.~)
	2022	250	250 (242)	213	287	43.2	
제주도 (‘22~’23)	2022	750	750	2	748	0.2	총사업비 증가(건설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비용 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및 지방재정투융자 채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 공사착공 예정(‘23.4.~)
함평군 (‘22~’23)	2022	250	250	6	242	2.4	공공건축 기획(4개월 소요) 및 지방재정투자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공사착공 예정(‘23.6.~)
성주군 (‘22~’23)	2022	250	250	250	0	100.0	-
부산 서구 (‘22~’23)	2022	250	250	5	245	2.0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사업 반대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진도군 (‘22)	2022	250	250	250	0	100.0	-
광명시 (‘22~’23)	2022	-	-	-	-	-	보훈단체의 회관 이전 철회 요청에 따른 건립사업 포기
홍성군 (‘22~’23)	2022	-	-	-	-	-	보훈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기존 회관 기부채납 반대 등)로 인한 건립사업 포기
합 계 ¹⁾		2,250	3,165	1,649	1,516	45.6	-

주: 1) 2022회계연도 기준

1. 괄호안의 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자료: 국가보훈부

2022년도에 기존에 교부받은 전년도 이월금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포항시·장흥군·태백시와 202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중에서 실집행률이 100%인 동두천시와 성주군, 진도군을 제외하

면,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광명시와 홍성군의 경우 건립사업을 포기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3억 5,500만원이 교부되지 못하고 불용되었다.

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당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일부 절차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나, 2022년도의 집행 부진 또는 건립 포기 사유를 보면, 지방보훈회관의 입지나 기존 회관의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보훈단체의 반대, 사업대상지 인근주민들의 반대, 지방자치단체와 보훈단체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립 부지 등 사업 구상과 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보훈단체의 의견,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같은 요건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보훈부는 향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요건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생활조정수당 사업¹⁾은 독립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에 예산현액 491억 9,100만원 중 49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생활조정수당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생활조정수당	42,027	42,027	-	7,164	49,191	49,176	-	15	55,899
생활조정수당	35,143	35,143	-	10,187	45,330	45,320	-	10	47,766
생계지원금	6,874	6,874	-	△3,023	3,851	3,851	-	-	8,124
실태조사(여비)	10	10	-	-	10	5	-	5	9

주: 1.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 생활조정수당 세부사업은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편성내역 등을 참고하여 구분

자료: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으로서,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고 있으며,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된다.

생계지원금은 2022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생활조정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들 각 보훈대상자별 지원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²⁾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133-302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개요]

구 분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곤란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지급기준 (월지급액)	- 3인가구 이하: 50% 이하 22만원, 40% 이하 25만 2,000원, 30% 이하 28만 3,000원 - 4인가구 이상: 50% 이하 27만 3,000원, 40% 이하 30만 5,000원, 30% 이하 33만 6,000원	1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생활조정수당 사업을 통하여 지급되는 급여 중 생활조정수당은 지급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매년 부족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여 지급되고 있는 바, 국가보훈부는 지급 인원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고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에 생활조정수당 사업을 통하여 1만 3,795명에 대해 총 453억 2,000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집행하였으며, 3,199명에 대해 총 38억 5,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집행하였다. 이 중 생활조정수당 항목의 경우 당초 지급대상으로 추정한 인원은 1만 745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급 인원이 편성 인원을 초과하여 예산 과부족이 발생하였는데, 보상금 세부사업³⁾으로부터 71억 6,400만원을 전용하여 과부족분을 충당하여 대상자에 지급하였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각각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021.7.23. 국회본회의를 거쳐 2021.8.17. 공포되어 2022.2.18. 시행되었다.

3) 코드: 일반회계 1132-300

이와 같은 집행 행태는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 당초 본 예산액 420억 2,700만원 대비 17% 수준인 71억 6,400만원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증액되었는데, 2021년 대비 예산조정으로 증액된 재원의 규모와 본예산 대비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생활조정수당 사업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예산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2022회계연도 생활조정수당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26,041	26,041	-	2,750	28,791	28,753	110.4	99.9	-	38
2020	27,178	27,178	-	5,562	32,740	32,734	120.4	100	-	6
2021	29,798	29,798	-	10,001	39,799	39,768	133.5	99.9	-	31
2022	42,027	42,027	-	7,164	49,191	49,176	117	100	-	15

자료: 국가보훈부

이는 생활조정수당 사업을 통하여 지급되는 급여 항목 중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추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항목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전년도의 평균 지급인원 수준으로 지급 인원을 추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2년도 생활조정수당 지급 인원은 2021년 평균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1만 745명으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2년 생활조정수당 항목 지급인원 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실 적						2021 예산	2022 추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평균		
3인 가구 이하	50% 이하	717	886	670	899	1,109	1,082	899	1,082
	40% 이하	1,074	1,273	1,343	1,586	1,849	1,861	1,586	1,861
	30% 이하	3,085	5,041	5,926	6,115	6,748	7,307	6,115	7,307
4인 가구 이상	50% 이하	159	180	160	134	147	140	134	140
	40% 이하	117	143	133	133	130	123	133	123
	30% 이하	123	214	246	230	234	232	230	232
합 계		5,275	7,737	8,478	9,097	10,217	10,745	9,097	10,745

자료: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항목 지급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지급계획		지급실적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18	6,476	16,374	8,478	21,676
2019	8,267	26,031	9,097	28,753
2020	8,478	27,178	10,217	32,734
2021	9,097	29,788	12,057	39,768
2022	10,745	35,143	13,795	45,320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2022년 생활조정수당 항목의 실제 지급 인원은 1만 3,795명 수준으로 지급 인원이 편성 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과부족이 발생하였는데, 2022년도 지급 인원 추계치 1만 745명은 2021년도 예산 상의 지급 인원인 9,097명 보다는 증가된 규모로 지급 인원을 추계한 것이나, 실제 지급 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지급 인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추계 방식에 따를 경우 향후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활조정수당의 과부족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이·전용 등 예산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생활조정수당 사업은 동 사업을 통하여 지급되는 급여 중 생활조정수당 항목의 지급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매년 과부족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여 지급되고 있는 바,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항목의 지급 인원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고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억 3,900만원이며, 15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4.7%인 11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4억원을 미수납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39	539	539	1,579	1,179	400	-	74.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27억 9,300만원이며, 이 중 95.4%인 884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3,288	92,793	92,793	88,484	-	4,309	95.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산은 355억 2,000만원, 부채는 7,000만원으로 순자산은 354억 5,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4억 8,800만원, 투자자산 7,400만원, 일반유형자산 219억 1,000만원, 무형자산 117억 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3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9억 1,400만원(△7.6%) 감소하였다. 이는 감가상각에 의한 무형자산 31억 5,300만원(△21.2%)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200만원(37.5%) 감소하였다. 이는 소송충당부채가 당기 7,0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기 대비 4,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5,520	38,434	△2,914	△7.6
Ⅰ. 유동자산	488	1,974	△1,486	△75.3
Ⅱ. 투자자산	74	51	23	45.1
Ⅲ. 일반유형자산	21,910	21,548	362	1.7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1,705	14,858	△3,153	△21.2
Ⅵ. 기타비유동자산	1,343	3	1,340	44,666.7
부 채	70	112	△42	△37.5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70	112	△42	△37.5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35,450	38,322	△2,872	△7.5
Ⅰ. 기본순자산	13,678	13,678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4,895	17,751	△2,856	△16.1
Ⅲ. 순자산 조정	6,877	6,893	△16	△0.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89억 6,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989억 9,000만원, 비배분비용 8,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억 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2억 9,200만원(2.6%) 증가한 989억 6,800만원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유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13억 7,500만원 증가하였고, 비배분비용 1,300만원 감소 및 비배분수익 6,900만원 증가에 따라 비배분손익이 전년도 대비 8,2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 989억 9,000만원은 모두 국민권익증진 프로그램원가이다.

그 밖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집계된 원가는 없으며, 비배분비용은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등 기타비용 8,4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은 소송충당부채환입액 등 기타수익 1억 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8,990	97,615	1,375	1.4
가. 프로그램 총원가	98,990	97,615	1,375	1.4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84	97	△13	△13.4
IV. 비배분수익	105	36	69	191.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8,968	97,676	1,292	1.3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98,968	97,676	1,292	1.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383억 2,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54억 5,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8억 7,200만원(7.5%)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989억 6,8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1,6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961억 1,200만원으로 집계되어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972억 9,1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및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1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환입 1,6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38,322	39,283	△961	△2.4
Ⅱ. 재정운영결과	98,968	97,676	1,292	1.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6,112	94,672	1,440	1.5
Ⅳ. 조정항목	△16	2,043	△2,059	△100.8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35,450	38,322	△2,872	△7.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②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 등이 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은 부패신고 보상금과 공공재정환수신고 보상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공공재정환수신고 보상금의 액수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으로 일부금액을 이관하여 3억원이 감액(29억 8,200만원→26억 8,200만원)되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은 홍보예산을 개별사업이 아닌 홍보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일부 금액을 이관하여 2억 6,900만원이 감액(5억 7,000만원→3억 1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 ②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③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 등이 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2,800만원이 증액(30억 6,000만원→30억 8,800만원)되었다. 또한, 세부사업 간의 증감액 연계에 따라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3억 6,900만원 증액(16억 5,200만원→20억 2,100만원)되었고,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은 3억원이 증액(4억 4,600만원→7억 4,600만원)되었다.²⁾

1) 정부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 12.

2) 정부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인건비(대상) 사업, ②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 ③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 ④ 청렴권의정책알리기 사업, ⑤ 청렴권의국제교류 사업, ⑥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⑦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 ⑧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 ⑨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등이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민생안정 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전 부처·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지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³⁾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5.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②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 ③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2년도에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행정심판 처리건수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운전면허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이 법정 최장 처리기간인 90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의 법정 개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¹⁾에 편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을 통하여 추진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컨설팅 등 운영 및 자료발간, 회의장소 임차, 컨설팅 출장 여비, 관계기관 업무 협의 등에 필요한 소요 재원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1,331	-	-	1,331	1,310	-	21	1,331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활성화 지원	100	100	-	-	100	100	-	-	10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옴부즈만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²⁾의 조사 및 처리와 고충민원과 관련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135-350

2)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³⁾

나. 분석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22년말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70개로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즉,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등 일반민원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2차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개)

지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합계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17)	18
경기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17)	18
부산	-	-	-
인천	-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3)	3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구, 북구 (3)	4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북구 (3)	4
대전	-	대덕구(1)	1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울주군 (3)	4
세종	-	-	-
강원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2)	3
충북	-	영동군, 제천시 (2)	2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시, 아산시 (3)	4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 (1)	2
전남	전라남도	담양군, 순천시, 여수시, 화순군 (4)	5
경북	-	상주시 (1)	1
경남	-	양산시 (1)	1
제주	-	-	-
합 계	9	61	7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체 17개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9개로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미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 기준으로 17개, 40만 이상 기준으로 25개, 20만 이상 기준으로 56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규모 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개)

구분	대상 지자체	설치 지자체 (2022.12.기준)	미설치 지자체
50만 이상	39	22	17
40만 이상	57	32	25
20만 이상	115	59	5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제3자적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원처분 기관 또는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기관 또는 부서가 재차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의견표명 기능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도적인 의의와 효용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설치를 확대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고, 일정 자격을⁴⁾ 갖춘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을 주된 미설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제도 운영의 총괄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 ④ (생략)

가. 현 황

행정심판 운영 사업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행정심판 운영 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 8,300만원이며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행정심판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행정심판 운영	1,076	1,076	-	7	1,083	1,065	-	18	1,06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한다.

나. 분석의견

2022년도에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행정심판 처리건수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운전면허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이 법정 최장 처리기간인 90일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137-370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최장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재결기간은 6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2년도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은 전년 대비 단축되었으나, 법정 처리기간을 도과한 60일 초과 90일 이내 처리건수 비율, 30일의 연장기간을 감안한 법정 최장 처리기간을 도과한 90일 초과 처리건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행정심판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총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처리기간 내		처리기간 초과
			60일 이내	61~90일	90일 경과
2018	25,153	82.61	15,774 (62.7%)	3,277 (13.0%)	6,102 (24.3%)
2019	21,534	68.76	16,210 (75.3%)	1,723 (8.0%)	3,601 (16.7%)
2020	22,727	88.36	14,303 (62.9%)	2,877 (12.7%)	5,547 (24.4%)
2021	18,873	81.5	13,027 (69.0%)	1,681 (8.9%)	4,165 (22.1%)
2022	21,159	75.83	13,570 (64.1%)	2,677 (12.7%)	4,912 (23.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유형별로 행정심판 처리 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재결기간이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의 경우 법정 최장 처리기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2022년도 평균 재결기간이 일반사건²⁾은 106.1일, 보훈사건³⁾은 176.7일에 달한다. 운전면허사건⁴⁾

2) 보훈사건과 운전면허사건을 제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으로서, 고용노동, 정보공개, 국방, 법무, 국토교통, 각종 시험, 보건복지, 재정금융, 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나 유족 신청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이다.

의 경우 접수 건수는 가장 많으나 평균적으로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전면허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리적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고, 운전면허사건을 전담하여 심리·의결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사건 유형별 행정심판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일반사건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2018	4,912	5,251	195.81	1,304	1,442	140.31	16,827	18,460	45.90
2019	9,258	7,607	111.02	1,292	1,148	109.80	13,526	12,779	39.92
2020	6,762	7,139	157.83	1,328	1,080	188.69	14,277	14,508	46.71
2021	5,497	5,465	147.0	1,134	1,218	187.4	12,598	12,190	41.5
2022	7,658	7,006	106.1	1,197	1,437	176.7	12,614	12,716	47.7

주: 2019년도는 한 명의 청구인으로부터 3,088건의 단순반복적인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재결기간은 단축되었으나 그 외 일반사건 처리가 지연되었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도 운영의 주된 취지가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관계에 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 법정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914억 3,300만원이며, 1조 2,192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5.3%인 6,736억 6,900만원을 수납하고 5,453억 6,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억 4,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91,433	391,433	391,433	1,219,274	673,669	545,363	242	55.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86억 800만원이며, 이 중 97.6%인 1,548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7,025	157,025	158,608	154,841	1,963	1,804	97.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은 4,514억 500만원, 부채는 9억 3,300만원, 순자산은 4,504억 7,2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218억 7,700만원(5.1%)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4,314억 6,600만원, 투자자산 2억 2,300만원, 일반유형자산 41억 400만원, 무형자산 130억 9,2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5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징금 등의 제재금수익 징수결정으로 인한 미수제재금(미수채권) 153억 2,700만원 순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184억 2,700만원(△95.2%) 감소한 것으로 장기충당부채 9억 3,3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사건들 중 일부 패소로 인한 환급(△96억 3,300만원) 및 파기환송에 따른 환입(△88억 600만원)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51,405	429,528	21,877	5.1
Ⅰ. 유동자산	431,466	415,042	16,424	4.0
Ⅱ. 투자자산	223	155	68	43.9
Ⅲ. 일반유형자산	4,104	4,357	△253	△5.8
Ⅳ. 무형자산	13,092	7,960	5,132	64.5
Ⅴ. 기타비유동자산	2,521	2,014	507	25.2
부 채	933	19,360	△18,427	△95.2
Ⅰ. 장기충당부채	933	19,360	△18,427	△95.2
순 자 산	450,472	410,168	40,304	9.8
Ⅰ. 기본순자산	7,933	7,933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439,402	399,058	40,344	10.1
Ⅲ. 순자산 조정	3,138	3,177	△39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386억 1,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806억 1,800만원, 관리운영비 756억 2,400만원, 비배분비용 428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604억 5,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33억 1,700만원(37.5%) 감소한 1,386억 1,600만원이며, 이는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대비 56억 5,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대손상각비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413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소비자후생 증진프로그램(601억 300만원)과 경쟁촉진 프로그램(189억 8,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20억 3,200만원과 복리후생비 88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410억 7,200만원, 기타비용 175억 9,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0,618	74,964	5,654	7.5
가. 프로그램 총원가	80,618	74,964	5,654	7.5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75,624	72,014	3,610	5.0
III. 비배분비용	42,833	84,133	△41,300	△49.1
IV. 비배분수익	60,459	9,177	51,282	558.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38,616	221,933	△83,317	△37.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38,616	221,933	△83,317	△37.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4,101억 6,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504억 7,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03억 400만원(9.8%)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순자산이 전년도 대비 1,658억 9,300만원 증가한 반면,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 결과는 기초 대비 833억 1,700만원 감소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082억 6,500만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410,168	244,275	165,893	67.9
Ⅱ. 재정운영결과	138,616	221,933	△83,317	△37.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78,959	387,224	△208,265	△53.8
Ⅳ. 조정항목	△39	602	△641	△106.5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450,472	410,168	40,304	9.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②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정보화) 등이 있다.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은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등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정보화)사업은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정보화 기반확충사업(정보화)**이 있다. 정보화 기반확충 사업은 기업결합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디지털 공정경제구현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② 甲·乙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③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대응 강화를 2022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특례적 규정 및 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그 취지에서 벗어나 공고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CP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업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도입 시 CP 도입이 기업의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 등을 면밀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연구용역비 집행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정책연구개발사업(R&D) 등 8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예산현액은 일반연구비(260-01) 16억 3,400만원, 정책연구비(260-02) 7억 5,800만원 등 23억 9,2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에 연구용역비를 활용하여 총 62건의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연구비(260-01) 15억 1,800만원, 정책연구비(260-02)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연구용역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개발사업 (R&D)(260-02)	382	382	14	-	396	391	-	5	363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260-01)	75	75	-	△3	72	31	41	-	75
사익편취행태개선	70	70	-	-	70	70	-	-	110
(260-01)	-	-	-	-	-	-	-	-	30
(260-02)	70	70	-	-	70	70	-	-	80
규제개선 및 경제 분석	447	447	-	-	447	424	15	8	388
(260-01)	393	393	-	-	393	375	15	3	334
(260-02)	54	54	-	-	54	49	-	5	54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260-01)	365	365	-	-	365	349	-	16	455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 성장 시책 추진 (260-01)	66	66	-	-	66	66	-	-	66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260-01)	185	185	-	-	185	182	-	3	18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260-01)	550	550	-	-	550	515	-	35	550
합계	2,140	2,140	14	△3	2,151	2,028	56	67	2,189
(260-01)	1,634	1,634	-	△3	1,631	1,518	56	57	1,692
(260-02)	506	506	14	-	520	510	-	10	49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특례적 계약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그 취지에서 벗어나 공고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한 계약체결 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용역으로서 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된 연구용역 23건은 공고기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원칙적인 공고기간 40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건명	공고기간	낙찰금액	수행기관
정책연구개발 사업(R&D) (260-02)	공사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결제조건 공시 등에 관한 연구	2.23.~4.5.(11일)	25	A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28.~4.11.(12일)	30	B학교 산학협력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개선을 위한 연구	5.25.~6.9.(16일)	46	C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행위 규제 적용제외 및 인가 제도 관련 연구	4.13.~5.4.(22일)	36	OOO학회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8.~4.21.(14일) 4.29.~5.11.(13일)	59	(사)▽▽▽ 연구소
	클라우드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 구	4.8.~4.21.(14일) 4.29.~5.11.(13일)	59	D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연구개발 사업(R&D) (260-02)	업종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실태 파 악을 통한 가맹시장 건전성 제고방 안 연구	6.7.~7.4.(28일) 7.20~7.27.(8일)	47	(사)OOO학회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260-01)	해외 앱마켓 규율동향에 대한 연 구	7.2.~8.1.(32일)	27	OOO연구원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를 위 한 연구용역	7.25.~8.5.(12일)	45	○○○학회
사익편취 행태개선 (260-0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공행위 심사지침 개선 방안 연구	7.26.~8.1.(7일) 8.8.~8.16.(9일)	30	D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260-02)	2020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9.5.~9.21.(17일)	30	OOO연구원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 영업활동 규제 개선방안 연구	9.15.~9.26.(12일)	29	XXX연구원
	디지털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기업 연구	5.4.~5.15.(13일)	40	△△△대학교
	사물인터넷시장 분석	5.16.~6.2.(18일)	35	□□□연구원
	알뜰폰시장 분석	5.17.~6.2.(17일)	35	□□□연구원
	자동차부품시장 분석	5.24.~6.8.(16일)	38	OOO대학교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260-01)	2022년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3.31.~4.19.(20일)	297	(주)■□■□
	2022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6.9.~6.27.(19일)	25	(주)▽▽▽
	2022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용역	4.27.~5.9.(13일) 5.11.~5.17.(7일)	25	(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건명	공고기간	낙찰금액	수행기관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260-01)	2022년 표준하도급계약서제개정 (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4.29.~5.12.(14일) 5.18.~5.31.(14일)	66	E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260-0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마케팅으 로부터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7.8.~7.19.(12일)	50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자안전관리체계 실태조사	6.10.~6.21.(12일)	60	G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이러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실태조 사	5.24.~6.13.(21일)	32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본문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는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②의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은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대금지급 시기의 단축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취지로 2020년 5월 1일 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신설된 요건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있는데, 동 지침은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시적 조치사항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계약지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원칙적인 공고기간 40일 보다 단기의 공고기간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

1) 2022.12.30. 재연장: 2023.6.30.까지 적용 가능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의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의 취지, 기획재정부 계약지침의 취지 및 한시적·특례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내용, 성질, 용역수행자의 유형이나 업종 등이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 규정과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등으로 매출이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경기 침체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을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중 1건의 연구용역(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세부사업의 ‘2022년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발주금액 3억 1,500만원, 낙찰금액 2억 9,700만원)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의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²⁾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되어 동 요건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식 기반의 학술적 연구활동, 거래 또는 소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의 공고기간을 한시적·특례적 계약지침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연구용역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익편취행태 개선 세부사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공고기간이 7.26~8.1.(1차, 7일), 8.8.~8.16.(재공고, 9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의 예외규정과 기획재정부 계약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공고기간이 10일에 미치지 못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연구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시적·특례적 수의계약 요건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금액’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의 물품 및 용역 가액은 2억 1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의계약 체결 건이 일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연구용역 62건 중 53건의 연구용역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이 중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 건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건이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수의계약 근거	세부사업 (비목)	건명	발주 금액	낙찰 금액	수행기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정책연구 개발사업 (R&D) (260-02)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결제조건 공시 등에 관한 연구	25	25	A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공동행위 규제 적용제외 및 인가제도 관련 연구	40	36	OOO학회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 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30	30	B학교 산학협력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 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50	46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50	50	(사)XXX 연구소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50	45	OOO연구원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260-01)	해외 앱마켓 규율동향에 대한 연구	30	27	OOO연구원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 (260-01)	2022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25	25	(주)VVV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³⁾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실시 결과 입찰자가 1인이더라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대금지급 시기의 단축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취지로 2020. 5. 1. 신설되었는데, 동 규정 역시 한시적 특례조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적용 기한이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으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등으로 국가의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 성질, 용역수행자의 유형이나 업종 등이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한시적 특례조항이므로 공고기간의 특례와 마찬가지로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 조항을 근거로 지식 기반의 학술적 연구활동, 거래 또는 소비행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수의계약 요건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에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특례 규정 및 계약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그 취지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이하 “사익편취”) 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비율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내부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¹⁾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제12095호, 2013.8.13.)에 따라 신설되어 2014년 2월부터 실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규제 신설 당시 요건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으나, 2017년 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된 바 있으며, 최근(2020.12.29.)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요건을 확대하고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자회사를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1.12.30.부터 시행 중에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현황(2020년 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종전법	개정법(현행)
규제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요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대통령령에 위임)	상장사 · 비상장사 20% (법률 직접 규정)
계열회사의 자회사	불포함	포함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²⁾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부당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용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불명확한 심사지침을 보완하는 등 사익편취 규제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까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11건의 사건에 대하여 667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익편취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건수	0	1	1	2	2	2	0	3	11
금액	0	12	14	137	33	364	0	107	6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 11건 중 9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022 년도에 4건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³⁾ 판결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2건, 패소 1건, 일부승소 1건로 나타났으며, 패소 및 일 부승소 사건과 관련한 환급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5억 6,100만원이며, 일부승소 사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79억 4,700만원을 재부과하였다.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소송 진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과징금 부과대상	과징금 부과금액	소제기 여부	소송계류 현황 ¹⁾	소송 결과	과징금환급액 (가산금 포함)
2016	A사(4개)	1,281	×	-	-	-
2017	B사(3개)	1,430	○	확정	패소	1,555
2018	C사(3개)	2,987	○	확정	승소	-
	D사(3개)	9,515	○	확정	일부승소	8,006 ²⁾
		1,218	○	확정	승소	-
2019	E사(19개)	2,000	○	고법계류(환송심)	-	-
	F사(3개)	1,305	×	-	-	-
2020	G사(10개)	4,391	○	고법계류	-	-
	H사(10개)	32,008	○	고법계류	-	-
2021	-	-	-	-	-	-
2022	I사(9개)	4,974	○	고법계류	-	-
	J사 외 1인	1,600	○	고법계류	-	-
	K사(2개)	4,079	○	고법계류	-	-
2023	L사(2개)	8,004	×	-	-	-

주: 1) 2023.3월말 기준

2) 환급 이후 과징금 79억 4,700만원을 재산정하여 부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2017두63993(2022.5.12.), 2020두36267 외 1건(2022.5.25.), 2021두35759(2022.11.10.)

사익편취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인 B사 사건 판결에서는 ‘부당성’ 요건의 입증과 관련한 법리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제와 달리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행위요건과 별도로 부당성(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익편취 규제에 있어 부당성 요건이 공정거래 저해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성 요건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다.

해당 쟁점은 요건에 대한 법리적 내용으로 향후 계속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준거가 될 사항으로, 법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문의 ‘부당성’ 요건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과징금 부과를 통한 규제 작용이 갖는 침해적 성질을 좀더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을 해나가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는데,⁵⁾ 동 심사지침의 내용을 보면, 부당성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 그 밖에 물량몰아주기와 관련하여,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면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완화하였다.

5) 2023.3.30.~4.20. 행정예고를 거쳐 2023.5.22.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심사지침의 내용은 부당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나열한 법원의 판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각 세부 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심사지침이 개별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라 사익편취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규제 대상 기업들에게도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례가 ‘의도·목적이 부당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이익의 규모가 작아도 부당성을 인정하는 등’ 몇가지 요건만으로 부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입장이어서 사안별로 개별 요건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고, 사익편취 규제는 다른 규제 대비 판례나 심결례도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 심사지침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징금 처분의 기준이나 준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량권의 남용, 형평성 침해 등 처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한 이익’ 여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한 소 제기도 지속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과징금 환급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사익편취 금지 행위의 부당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용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사익편취 규제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현 황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은 소비자분야 전문기관 등에서 청년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운동 체험을 실시하여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제고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지원(봉사활동)으로 연결하여 전 세대 소비자 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소비자권익증진 사업¹⁾의 내역사업이며, 2022년도 신규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은 전액 일반용역비로 8억 4,700만원이며, 7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협의회가 수탁사업자로서 사업을 시행하였다.²⁾

[2022회계연도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3,147	3,147	-	-	3,147	2,995	-	152	3,147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847	847	-	-	847	771	-	76	84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은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봉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441-610

2)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 절차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의 감액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던 문제가 있다.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은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운영과 이와 연계된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22년도에 동 사업은 9월 6일 제1회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전국 16개 대학에서 커리큘럼에 따른 강의, 견학 및 현장실습을 내용으로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소비자 리더와 청소년 교육봉사자가 팀을 구성하여 전국 각 지에서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초 계획 대비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투입 예산도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당초 계획	집행 현황
청년소비자리더 아카데미 운영	소비자리더 모집 홍보비: 30 아카데미 운영 제반 비용: 20 소비자전문가 자문: 12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112 소비자리더 교육비: 175 소비자리더 선발 및 관리: 50	소비자리더 모집 홍보비: 1 아카데미 운영 제반 비용: 18 소비자전문가 자문: 2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20 소비자리더 교육비: 88
	399	129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교육교재 제작: 30 교육기념품 제작: 30 봉사단 교육교사 수당: 18 봉사단 교육장 임차료: 3 봉사단 관리자 인건비: 20 봉사단 활동 지원비: 330 우수봉사자 시상식 등: 17	교육교재 제작: 83 교육기념품 제작: 139 봉사단 교육교사 수당: 89 봉사단 교육장 임차료: 61 봉사단 관리자 인건비: 115 봉사단 활동 지원비: 143 일반관리비 등 기타: 12
	448	6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동 사업은 2022년도 국회 감액사업으로서, 청년소비자리더 아카데미는 정부 제출안 4억 4,200만원 대비 4,300만원,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은 정부 제출안 4억 9,400만원 대비 4,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에 편성된 예산은 4억 4,800만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에 6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정부 제출안에 편성되었던 예산액 4억 9,400만원 보다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봉사 대상자 수를 늘리는(당초 3,600명 수준에서 10,000명 수준) 등 교육 봉사활동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요를 감안한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일부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항목에 대하여 당초 정부제출안에 편성된 감액되기 전의 예산 규모까지 초과하여 재원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교육기념품 제작 예산 집행의 경우 교육봉사 활동 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물량이 늘어나는 데 상응하여 품목의 조정 등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편성된 재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은 봉사단 관리자 인건비 등 별도의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9월부터 12월까지 청년소비자리더 562명, 청소년 교육봉사자 2,781명이 참여하여 어르신 10,268명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제주도 제외)에서 총 371회의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 대비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면서 투입된 예산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하였는데, 봉사단 관리자 인건비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 2,000만원 대비 5배를 초과하는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추진 실적]

(단위: 명)

지역	청년소비자 리더(대 학생)	청소년 교육봉사자 (중고생)	봉사활동 대상 ¹⁾
서울/인천/경기	167	618	2,791
부산/울산/경남	78	467	1,597
대구/경북	146	917	2,659
대전/세종/충남	84	294	1,516
충북	9	29	81
광주/전남	36	235	856
전북	36	195	673
강원	6	26	95
합 계	562	2,781	10,268

주: 1) 동 사업의 교육봉사활동 대상은 노인층

자료: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결과보고서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의 목적은 소비자리더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 소비자리더들이 미래세대의 새로운 경제주체로 역할을 할 청소년 소비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 소비자에게 소비자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디지털격차 해소, 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 문제 대응역량 제고, 세대 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스마트한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소비자 리더 등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 추진체계 및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

동 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은 사업수탁자가 봉사자와 봉사 수요처를 매칭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봉사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소비자교육 봉사활동 추진 프로세스]

구분	주요내용
교육수요 파악 및 봉사자 선발	- 지역별 교육수요 파악 - 교육 희망지역, 주관단체, 대상, 교육장소 등 정리 각 지역의 학교, 교회,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봉사자를 선발 ※ (사)○○○협의회 12개 회원단체의 본부가 지역지부와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
교육봉사 신청	(사)○○○협의회 12개 회원단체 본부 → (사)○○○협의회
교육봉사 대상자 (봉사처) 선정	전국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교회, 종합복지관 등에 교육 취지,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희망하는 곳과 협의, 봉사처 선정
사전교육	청년소비자 리더와 청소년 만남(매칭) 및 사전교육 ※ 교육 봉사활동 시작 최소 1시간 전 청년소비자 리더가 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예비실습
교육봉사 활동 진행	청년소비자 리더가 강의를 담당하고 청소년이 보조강사로서 교육 봉사 활동 진행

자료: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 실시,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는 봉사처, 전국 자원봉사센터, 1365자원봉사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표준교재의 배포 등과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소비자 리더나 중고등학생이 현행 자원봉사체계를 통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수탁사업자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봉사단 관리자 인건비 등 별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탁사업자가 청년소비자 리더나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을 관리하고 일정 수준의 봉사활동 실적을 산출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은 2022년도와 같이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³⁾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봉사자와 봉사수요자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줄 뿐 그 결과 등 봉사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되는 봉사수요는 주로 무료급식소 지원, 요양원 어르신 이동 보조, 기부물품매장 관리 등 단순 노무제공이 대부분이며,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의 봉사단 관리자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봉사수요처와 중고등학생을 적극 발굴·모집하고 이들을 청년소비자 리더와 함께 교육하여 조직화하는 한편, 봉사자인 청년소비자 리더와 중고등학생들의 건강·안전 등 봉사활동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봉사활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소비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출예산과 자체수입의 차이 만큼을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2022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사업¹⁾ 예산현액은 503억 4,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소비자원 출연	50,341	50,341	-	-	50,341	50,341	-	-	50,85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아 실현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과다 계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과거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현재 해소된 수입원이 반영되어 과다 계상되고 있는 기타수입을 점검하여 수입 결손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지출 결산 현황을 보면, 수입 실적은 출연금 503억 4,100만원, 자체수입 18억 3,300만원, 임차보증금 반환 16억 2,900만원 등 538억 300만원이며, 지출 실적은 인건비 357억 9,400만원, 사업비 110억 3,300만원, 운영비 64억 7,000만원 등 총 532억 9,700만원이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461-630

[2022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A)	집행액(B)	차액(B-A)
수입	출연금	50,341	50,341	50,341	-
	자체수입	4,124	4,124	1,833	△2,291
	전년도 이월금	1,040	1,040	226	△814
	수탁용역사업	2,318	2,318	1,333	△985
	교육연수수입	40	40	3	△36
	이자수입	125	125	164	39
	기타수입	601	601	108	△493
	임차보증금 반환 등	2,861	2,861	1,629	△1,232
	합계	57,326	57,326	53,803	△3,52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A)	집행액(B)	차액(A-B)
지출	인건비	35,312	35,804	35,794	10
	사업비	12,438	12,438	11,033	1,405
	연구조사	1,130	1,092	1,054	38
	정보교육	3,273	3,273	3,183	90
	소비자안전	1,105	1,027	980	47
	시험검사	2,943	2,966	2,779	187
	분쟁조정	1,196	1,289	1,277	12
	지방소비자	380	380	313	67
	대외협력	259	259	140	119
	수탁용역	2,152	2,152	1,307	845
	운영비	7,872	7,872	6,470	1,402
	예비비	1,704	1,212	-	1,212
	합계	57,326	57,326	53,297	4,02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년 수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지출 결산에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여 수입 결손을 상쇄하고 잔액이 남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재정 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예산현액(A)	45,331	47,725	51,915	55,266	57,326
	실적(B)	43,868	47,339	50,900	53,160	53,802
	결손액(B-A)	△1,464	△385	△1,015	△2,106	△3,523
지출	예산현액(C)	45,331	47,725	51,915	55,266	57,326
	실적(D)	42,872	46,154	50,224	52,934	53,297
	집행잔액(C-D)	2,459	1,571	1,691	2,332	4,029
결산잉여금		995	1,186	676	225	50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수탁용역 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 수입에서 결손이 9억 8,500만원, 지출에서 집행잔액이 8억 4,500만원 발생하여 예산액과의 차액이 큰 규모로 나타났고, 1억 4,000만원의 순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수탁용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예산액과 지출액의 과다 계상에 따른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

수탁용역 사업의 수입은 위탁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위탁사업비이며, 지출은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당초 계획된 수탁용역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수입 결손이 발생하는 반면 집행 소요도 해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의 고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기관 사업비 등 재정운용의 규모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위탁사업비 수입 예산을 지출 예산에 비해 과다 계상하는 경우에는 결산상잉여

2) 한국소비자원은 2020~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기존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나, 연중 계획이 변경되어 과업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추진함에 따라 결손 규모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결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수입 예산은 16억 6,000만원, 지출 예산은 14억 9,400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어 있으나, 수입 예산이 지출 예산에 비해 과다 계상되어 있고, 2022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인 바, 수탁용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순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집행 실적을 보아 실현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18~2023년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예산액(A)	1,660	1,660	2,277	2,741	2,318	1,660
	실적(B)	1,127	1,162	1,662	1,751	1,333	-
	결손액(B-A)	△533	△498	△615	△990	△985	-
지출	예산액(C)	1,325	1,194	1,672	2,340	2,152	1,494
	실적(D)	1,144	1,136	1,591	1,794	1,307	-
	집행잔액(C-D)	181	58	81	546	84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자체수입원 중 기타수입의 경우에도 편성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수입 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기타수입은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법인세 환급금 등 잡수입을 계상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예산액이 6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최근 5년 간 가장 큰 규모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기타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A)	374	374	601	601	601
결산액(B)	383	600	195	127	108
과부족(B-A)	9	226	△406	△474	△49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는 과거(2017~2019년) 특이 소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결산 실적을 토대로 기타수입 예산액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당시 청사 신축 관련 지체배상금·정부지원금 등 한시적 수입 요인으로 인해 연평균 5억 6,000만원 수준의 수입이 실현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는 수입 항목이며, 최근 3년의 수입 실적은 연간 1억 4,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출총액과 자체수입의 차이만큼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전받는 한국소비자원의 재정구조를 감안할 때, 수입실적 저조에 따른 자체수입 결손이 반복될 경우 기관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당국은 기타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한국소비자원의 수입 결손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CP제도 운영 사업은 기업들로 하여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을 유도하고, CP 등급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외활동 강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예산은 CP 등급평가 위탁 일반용역비, CP제도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 예산현액 4,800만원 중 4,7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CP제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외활동 강화	386	318	-	-	318	306	-	12	457
CP제도 운영	48	48	-	-	48	47	-	1	4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못지 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1년 7월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다.

[CP 도입 요건]

① CP 기준, 절차 마련 및 시행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③ CP운동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⑦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231-31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통하여 CP 도입요건을 제시하고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급평가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CP 등급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직권조사 면제 ¹⁾	공표명령 감면	기타
인센티브 내용	AAA(2년) AA(1년 6개월) A(1년)	AAA(면제) AA 또는 A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 및 공표기간 단축)	등급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 (2년 연속 AA 이상일 경우)

주: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등은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CP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업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도입 시 CP 도입이 기업의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 등을 면밀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 모두 기업의 자율사항이므로 기업의 CP 도입 의지가 제도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연도별 CP 신규 도입 기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대기업의 신규 도입이 전년 대비 증가(2개→13개)하고 등급평가 신청기업 수도 전년 대비 증가(10개→16개)하였다.

[CP 신규도입 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합계
2010	6	4	-	10
2011	21	86	2	109
2012	12	52	2	66
2013	2	32	1	35
2014	28	17	1	46
2015	2	1	1	4
2016	6	9	1	16
2017	11	10	1	22
2018	12	2	1	15
2019	-	-	3	3
2020	1	-	10	11
2021	2	1	2	5
2022	13	1	3	1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2022년 CP 등급평가 현황]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	재평가 ²⁾	신규	재평가	신규	재평가	신규	재평가	신규	재평가
CP 평가기업 수 (누적) ¹⁾	11(413)		5(418)		7(425)		10(435)		16(451)	
-신청기업 수	6	5	5	-	6	1	9	1	8	8
· 평가 성공 (A등급이상)	5	5	5	-	3	1	7	1	6	7
· 평가 성공 (A등급미만)	1	-	-	-	3	-	1	-	2	1
· 평가 탈락 ³⁾	-	-	-	-	-	-	-	-	-	-
· 평가 포기	-	-	-	-	-	-	-	-	-	-

주: 1) 동일기업이 중복평가(재평가)를 받은 경우는 평가기업 수에서 제외

2) 당해 평가 이전에 등급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재평가에 포함(다만, 등급평가의 유효기간은 2년)

3) 법위반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수로 신청기업 수에서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CP 신규도입 실적을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등급평가 신청 실적도 2022년 16개 사로 2022년말 현재 기준 CP 도입 기업 수가 734개 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으로서, CP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CP의 도입 등은 기업의 자율사항이지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예규를 제정·운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도입, 포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²⁾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이러한 움직임 역시 현행 CP제도가 예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CP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CP 도입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CP 도입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기업이 2020년도 709개 중 68개, 2021년도 717개 중 63개, 2022년도 734개 중 40개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준법시스템을 도입한 지 1년이 경과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CP 등급평가 기업의 경우에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위반 행위로 평가신청 연도 기준 직전 연도부터 평가신청 연도까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21년도의 경우 10개 기업 중 1개, 2022년도의 경우 16개 기업 중 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2)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안(2021.11.12.)

3) CP 등급 평가는 연도 중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연도말에 등급이 결정·부여되는데, 평가신청 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 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결정 시 과태료(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및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한다. 2021년도와 2022년도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의 법령위반 사항은 평가신청 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법령을 위반한 사례이다.

[2020~2022년 공정거래 관련 법령위반 현황(경고이상)]

(단위: 개, 건)

연도	구분		법령위반 건수 ¹⁾	위반기업 수 ¹⁾
	기업	기업 수 ²⁾		
2020	CP 도입 기업	709	104	68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7	-	-
2021	CP 도입 기업	717	76	63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10	1	1
2022	CP 도입 기업	734	43	40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16	3	2

주: 1)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의 법령위반 건수와 위반기업 수는 평가신청 연도 기준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 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실적

2) 연도말 현재 CP를 단순 도입한 기업 및 해당연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볼 때, 법 개정에 따라 CP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현행 CP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선행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CP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CP 도입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는 공정거래 법령 위반으로 받은 불이익처분을 사후적으로 감경시켜 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므로 CP 도입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는 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지만, 공정거래 규제 제도 운영의 효과를 감소시킬 여지가 있고,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부 준법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처분을 CP 도입 여부나 평가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현행 법규범의 범위 내에서 공공조달 우수업체 평가 시 가점 부여와 같이 기업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나 편의의 제공, 우선순위 내지 가점 부여 등 인센티

브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도입 시 CP 도입이 기업의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17억 4,900만원이며, 3,500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0.4%인 3,165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327억 6,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억 4,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1,749	281,749	281,749	350,061	316,551	32,763	746	90.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1,567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4조 1,518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400,006	4,156,542	4,156,769	4,151,816	90	4,863	99.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9조 7,878억 1,800만원이며, 47조 3,847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2.0%인 29조 3,717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14조 6,642억 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조 7,960억 9,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5,137,034	7,134,062	7,134,062	8,644,548	7,107,748	-	-	82.2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55,717	55,717	55,717	69,100	53,260	-	-	77.1
신용보증기금	12,088,103	12,988,103	12,988,103	24,431,528	12,429,405	10,397,684	1,604,438	50.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202,913	2,202,913	2,202,913	3,864,729	1,759,174	2,050,359	55,195	45.5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210,023	4,210,023	4,210,023	6,029,136	3,676,515	2,216,158	136,463	61.0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3,197,000	3,197,000	3,197,000	4,345,682	4,345,682	-	-	100.0
합계	26,800,790	29,787,818	29,787,818	47,384,723	29,371,785	14,664,202	1,796,096	62.0

자료: 금융위원회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29조 8,040억 3,800만원이며, 이 중 98.5%인 29조 3,717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8,381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5,137,034	7,134,062	7,134,062	7,107,748	-	56,194	99.6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55,717	55,717	55,717	53,260	-	1,369	95.6
신용보증기금	12,088,103	12,988,103	13,003,641	12,429,405	-	1,621,668	95.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202,913	2,202,913	2,202,913	1,759,174	-	39,394	79.9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210,023	4,210,023	4,210,705	3,676,515	627	39,298	87.3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3,197,000	3,197,000	3,197,000	4,345,682	353	80,218	135.9
합계	26,890,790	29,787,818	29,804,038	29,371,785	980	1,838,140	98.5

자료: 금융위원회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5억 9,800만원 (0.4%)이 증가한 2조 7,19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2,034억 원2,900만원(79.4%)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58,122	281,749	281,749	316,551	34,802	58,429
기금	1,258,233	2,428,437	2,428,437	2,403,233	△25,204	1,145,000
합계	1,516,355	2,710,186	2,710,186	2,719,784	9,598	1,203,42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8억 2,000만원(0.3%)이 감소한 1조 5,51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038억 7,900만원 (15.1%)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339,376	800,006	1,556,542	1,551,816	△4,726	212,440
기금	8,642	175	175	81	△94	△8,561
합계	1,348,018	800,181	1,556,717	1,551,897	△4,820	203,87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30조 4,704억 6,800만원, 부채는 37조 9,011억 4,8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4,306억 8,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1조 8,226억 1,000만원, 투자자산 7조 3,983억 5,900만원, 일반유형자산 5,511억 9,800만원, 무형자산 353억 5,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629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4,796억 6,700만원(8.9%)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장기투자증권 감소 등으로 투자자산이 전기 대비 1,575억 1,100만원 감소하였으나 단기 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유동자산이 전기 대비 2조 5,789억 7,0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9조 2,599억 9,200만원, 장기차입부채 23조 8,874억 1,000만원, 장기충당부채 4조 5,674억 5,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862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조 3,468억 7,400만원(14.3%)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유동성 대체 등으로 유동부채가 전기 대비 6조 3,678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정부내장 기예수금 유동성 대체 및 상환 등으로 장기차입부채가 전기 대비 12조 7,176억 6,200만원 감소한데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0,470,468	27,990,801	2,479,667	8.9
Ⅰ. 유동자산	21,822,610	19,243,640	2,578,970	13.4
Ⅱ. 투자자산	7,398,359	7,555,870	△157,511	△2.1
Ⅲ. 일반유형자산	551,198	522,669	28,529	5.5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35,356	46,542	△11,186	△24.0
Ⅵ. 기타비유동자산	662,946	622,080	40,866	6.6
부 채	37,901,148	44,248,022	△6,346,874	△14.3
Ⅰ. 유동부채	9,259,992	2,892,147	6,367,845	220.2
Ⅱ. 장기차입부채	23,887,410	36,605,072	△12,717,662	△34.7
Ⅲ. 장기충당부채	4,567,453	4,489,933	77,520	1.7
Ⅳ. 기타비유동부채	186,293	260,870	△74,577	△28.6
순 자 산	△7,430,680	△16,257,222	8,826,542	54.3
Ⅰ. 기본순자산	528,988	482,831	46,157	9.6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183,429	940,944	242,485	25.8
Ⅲ. 순자산 조정	△3,718,993	△3,588,528	△130,465	△3.6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입(수익)이 재정지출(비용)을 초과하여 순수익이 3조 7,189억 9,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조 6,253억 5,000만원, 관리운영비 2,046억 1,900만원, 비배분비용 8,124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조 963억 6,100만원, 비배분수익 3,626억 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4조 9,024억 2,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424억 8,500만원(25.8%) 증가한 1조 1,834억 2,900만원이며, 이는 주택금융지원프로그램 및 금융정책프로그램 등의 원가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1,364억 1,4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금융지원 프로그램(2,488억 7,100만원)과 농림수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2,340억 4,000만원),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2,155억 6,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61억 5,000만원과 경비 1조 84억 6,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6,285억 7,900만원과 자산처분손실 1,398억 4,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28,988	482,831	46,157	9.6
가. 프로그램 총원가	2,625,350	2,488,936	136,414	5.5
나. 프로그램 수익	2,096,361	2,006,105	90,256	4.5
II. 관리운영비	204,619	187,301	17,318	9.2
III. 비배분비용	812,425	827,162	△14,737	△1.8
IV. 비배분수익	362,603	556,350	△193,747	△34.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183,429	940,944	242,485	25.8
VI. 비교환수익 등	4,902,422	4,529,472	372,950	8.2
VII. 재정운영결과(V-VI)	△3,718,993	△3,588,528	△130,465	△3.6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6조 2,572억 2,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조 4,306억 8,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조 8,265억 4,200만원 (54.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304억 6,5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조 1,520억 9,600백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778억 5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4조 2,663억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6,755억 5,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실 6,010억 3,5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58억 700만원, 출연금의증가 3조 920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6,257,222	△23,723,397	7,466,175	31.5
Ⅱ. 재정운영결과	△3,718,993	△3,588,528	△130,465	△3.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590,749	2,512,944	77,805	3.1
Ⅳ. 조항목	2,516,800	1,364,704	1,152,096	84.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7,430,680	△16,257,222	8,826,542	54.3

자료: 금융위원회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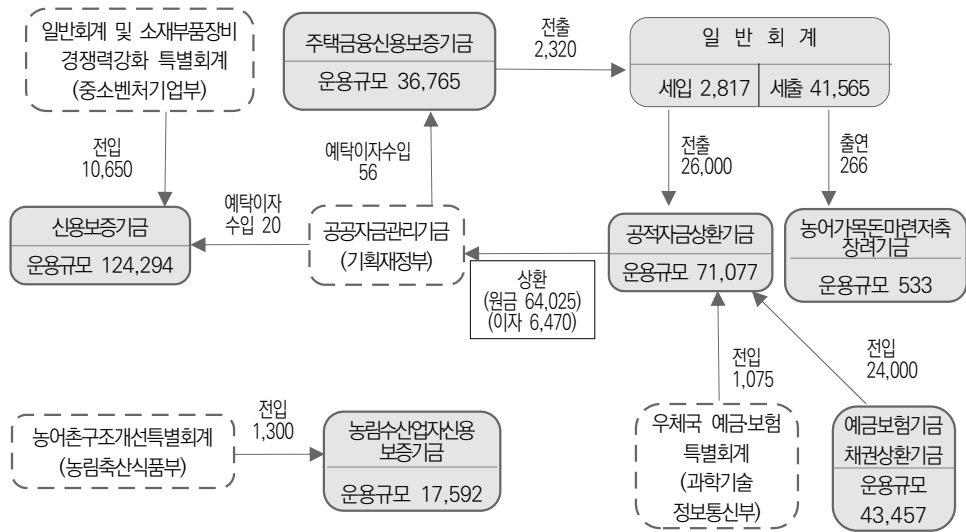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2조 6,0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1,075억원을 전입하였고,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266억원을 출연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회계에서 1조 50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서 600억원을 전입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허별회계에서 1,300억원이 전입되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위원회 일반회계로 2,320억원을 전출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6조 4,025억원, 예수이자 6,47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2조 4,000억원을 전입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억원의 예탁이자를 전입받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6억원의 예탁이자를 전입받았다.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주택금융공사 출자, ②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③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팩토링금융) 등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100억원이 감액(600억원→500억원)되었고,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사업은 400억원이 감액(6,400억원→6,000억원)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팩토링금융)은 50억이 감액(100억원→50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별회계전입금이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별회계전입금은 800억원이 증액(500억원→1,300억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팩토링금융 사업 및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팩토링금융 사업은 보증출연액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구노력 등을 병행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②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1,000억원이 감액(7,000억원→6,000억원)되었고,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은 1,800억원이 증액(7,200억원→9,000억원)되었다.

금융위원회는 ①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②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③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④ **포용금융 및 금융신평 확대**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주택시장에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사업의 특징과 다양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재정의 출자를 분할 실시하는 출자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에 기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대환을 포함시켜 정부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사업 집행 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과 보증리스크가 높은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보증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중 일부 프로젝트 자펀드는 장기간 결성이 지연되고 있고 매칭 대기 상태로 유보되어 있는 정부재정의 규모도 크므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해당 자금을 향후 정책펀드(혁신성장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펀드에 대해서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새출발기금 사업은 제5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재정의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과다한 출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에 따라 적정한 출자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새출발기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자금 예산 편성 시 적용된 매입가율에 비하여 실제 매입가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가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새출발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재정 출자금 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분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주택저당채권¹⁾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수요자에게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인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기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이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부 수익증권으로,²⁾ 유동화증권(이하 MBS를 기준으로 기술)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지급보증기관으로 하는 보증이 설정되는 바, 동 보증 공급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지급보증배수³⁾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의 출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2	2013	2015	2018	2019	2021	2022
출자액	정부	500	2,500	4,000	-	2,200	2,000	900	900	500	1,590
	한은	-	-	-	1,350	-	2,000	-	-	-	1,200
	합계	500	2,500	4,000	1,350	2,200	4,000	900	900	500	2,79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 1) 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후 취득한 저당채권
- 2)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Mortgage Backed Bond)이 있다. MBB의 경우 주로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다.
- 3) 지급보증배수 = 지급보증잔액 ÷ 자기자본

한편, 2022년도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외에,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제3차 안심전환대출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2015년도에 제1차, 2019년도에 제2차 안심전환대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는데, 2022년도의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2020년부터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2021년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2022년 들어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비교(2022.12월말 현재 기준)

구 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소득기준	연 7,000만원 (신혼 8.5천만원,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이상 1억원)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7,000만원)	제한없음
대출자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무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주택가격	6억원	5억원(전용면적 85㎡이하)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2.5억원 (신혼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5억원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1-1. 정책모기지 공급 사업의 특성과 사업 환경을 고려한 출자관리 필요

가. 현 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⁵⁾은 2022년도에 출자금 예산현액 1,59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50,000	159,000	-	-	159,000	159,000	-	-	166,80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에는 2022년도에 정책모기지 31조원 공급을 목표로 500억원의 출자금을 편성하였는데,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이 요구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주택시장에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공급 사업의 특성과 다양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재정의 출자를 분할 실시하는 출자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소요액은 통상 유동화증권 지급보증 잔액과 자기 자본 잔액을 토대로 산출된 지급보증배수가 적정 배수를⁶⁾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5) 코드: 일반회계 2632-301

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법정 지급보증배수는 50배로, 해당 범위 내에서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정책모기지 공급이 가능하나, 적정 배수를 초과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여

우 지급보증배수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소요액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지급보증배수의 과다 추계로 인한 출자금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된 바 있고,⁷⁾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가 이루어진 해 중 2008년을 제외하면 모두 실제 지급보증배수가 예산안 심사 시 예측한 배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의 경우 예산심사 시 예측 보증배수 41.9배 대비 2022년말 현재 실제 보증배수는 35배로 나타나 그 격차가 증가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배수 현황 I]

(단위: 억원, 배)

구 분		2007	2008	2009	2012	2013	2015	2018	2019	2021	2022
출자액	정부	500	2,500	4,000	-	2,200	2,000	900	900	500	1,590
	한은	-	-	-	1,350	-	2,000	-	-	-	1,200
	합계	500	2,500	4,000	1,350	2,200	4,000	900	900	500	2,790
예산심사 시 예측보증배수 (출자가정)		37.3	30.6	30.5	-	32.8	46.0	47.9	42.0	40.8	41.9
실제 보증배수		30.8	37.5	29.9	31.0	32.4	38.2	37.9	36.3	39.7	35.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2022년도의 경우 출자를 감안하지 않고 산출한 출자소요액 반영 전 지급보증배수가 37.6배로 적정 지급보증배수 하한인 39.4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출자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과다한 출자금이 유보되는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동화증권의 발행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상품의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 조건이 악화하여 정책모기지 공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배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지급보증배수는 39.4~40.7배로 설정되어 있다.

- 7) 국회는 2018회계연도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실추계를 예방하고 출자 사업 예산 필요 규모를 과다추계 하는 것을 지양하며 적정 보증배수 설정을 통해 필요 예산을 산정할 것과 향후 출자예산을 편성할 때 출자기관의 지급보증배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자금만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기초자산 공급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출자액 반영 전 지급보증배수가 적정 지급보증배수 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예산액 전액을 출자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금이 과다하게 유보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 바, 출자 예산 편성 시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를 면밀히 산출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등 출자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배수 현황 II]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초자산 공급	302,198	232,685	400,521	432,019	317,914	232,113
유동화증권 발행 ¹⁾	317,274 (311,623)	248,484 (241,996)	280,911 (274,231)	485,720 (466,000)	365,733 (344,644)	171,982 (150,253)
(출자소요액 반영 전) 지급보증배수(A/B)	41.9	39.0	37.2	40.3	40.2	37.6
지급보증잔액(A)	1,150,551	1,178,087	1,227,197	1,437,213	1,492,524	1,419,239
자기자본(B)	27,478	30,189	32,938	35,698	37,104	37,774
출자소요액 (C)	-	900	900	-	500	2,790 ²⁾
(당해연도 출자소요액 반영 후) 지급보증배수(A/(B+C))	41.9	37.9	36.3	40.3	39.7	35.0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MBB를 제외한 MBS 발행실적

2) 2022년 정부 출자액(1,590억원) 및 한국은행 출자액(1,200억원) 반영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와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의 출자금 과다 편성 또는 과다 출자는 정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 사업의 특성과 사업 환경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는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시장에 공급되는데, 유동화증권의 발행은 주택시장 경기, 채권시장의 금리 변동 상황, 정부의 주택정책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발행 목표 설정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 외부 변수의 변동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 계획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하반기에 계획하였던 유동화증권 발행을 취소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정책모기지 수요가 감소하고, 채권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 급등한 것이 주된 배경이었으며, 이와 같은 유동화증권 발행 취소 등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지급보증배수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

[2018~2022년 유동화증권(MBS)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1	2022
목표	31.6	30.6	37.0	31.0
실적	24.2	27.4	34.5	15.0
달성도	76.6	89.5	93.2	48.4

주: 2020년도의 경우 출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시 전액 출자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경기 등 유동화증권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의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수요에 상응하는 적정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를 분할 실시하는 출자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 시장에서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예정된 출자를 조기에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⁸⁾ 1년 뒤의 주택시장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매년 적정 수준의 정부배당 형태로 출자금을 간접환입하고 있으며, 대외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정책모기지 수요, 지급보증배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 규모의 출자금액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정부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확충 재원으로 정부재정 출자금 예산이 확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할출자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서는 유동화증권 금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적정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과다한 출자를 회수하는 방편으로 배당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적정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관

8)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안정적 유동화사업을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것으로 분할출자의 필요성이 낮고, 정책모기지 수요가 대출금리, 정부정책 등 시장환경에 따라 급변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의 공급실적으로 분할출자할 경우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우며, 단기간의 정책모기지 수요 감소 등에 따라 편성예산을 불용할 경우 시장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모기지 공급 사업의 특성과 다양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사업 환경을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출자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과 별도로, 유동화증권 발행 실적과 계획, 주택시장 및 채권시장의 여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 현황 및 지급보증배수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정부재정의 출자 규모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분할출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제3차 안심전환대출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가. 현 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해온 정책모기지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로 구성된다. 2022년도에는 기존 정책모기지 외에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였다.⁹⁾ 2022년도 본예산에는 기존의 정책모기지 31조원 공급을 계획하여 5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자금 예산을 1,090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동 증액분은 기존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 31조원을 24조원으로 감축·조정하되, 2022년도 하반기에 우대형 20조원, 2023년도에 일반형 20조원 총 4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안심전환대출(우대형) 20조원 공급 목표를 감안하여 지급보증배수 41.9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증액분) 산출내역]

$$\begin{aligned} & 2022\text{년 예산 보증잔액}(1,669,444\text{억원}) \div 41.9\text{배}(\text{최근 5년내 지급보증배수 최대치}) - \\ & 2022\text{년 예산 자본총계}(38,754\text{억원}) = 1,090\text{억원} \end{aligned}$$

자료: 금융위원회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2020년부터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2021년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2020년말 현재 69.4%, 2021년말 현재 76.1%), 2022년 들어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고금리·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2022년도에 우대형, 2023년도에 일반형을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면서 당초 2022년 공급 목표를 상향하여 25조원 규모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9) 제1차 안심전환대출: 2015년, 제2차 안심전환대출: 2019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고, 25조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안심전환대출(우대형)은 2022.9.15.~10.31. 1단계 신청접수, 2022.11.7.~12.30. 2단계 신청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제3차 안심전환대출 상품구조]

구 분		우대형		일반형
		1단계	2단계	
신청·접수기간		2022.9.15 ~ 10.31	2022.11.7 ~ 12.30	2023년 추진(계획)
대환대상 대출요건		제1,2금융권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좌동	좌동
차주 요건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요건 없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대출한도 ¹⁾	2.5억원	3.6억원	5억원
	주택보유	1주택	좌동	좌동
금리수준		출시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55bp 금리 인하	좌동	출시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10bp 금리 인하

주: 1)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이내 대출가능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정책모기지와 통합·운영한 것은 특정 목적의 한시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정부재정 출처의 취지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안심전환대출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는 바, 금융지원 정책사업 설계 시 상반될 수 있는 이해관계 등 제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제3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실적을 보면, 1단계 신청접수에서 4조원의 신청분 중 3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이후 요건을 완화한 2단계 신청접수에서 5.5조원 규모의 신청분 중 4.8조원이 공급되었다. 대출 공급액은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목표 대비 39% 수준인 7.8조원에 그쳐 공급실적이 부진하였다.¹⁰⁾

[제3차 안심전환대출(우대형) 신청·접수 및 공급 실적]

(단위: 억원, 건)

구분	신청·접수 실적		공급 실적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단계 ¹⁾	39,897	39,026	29,303	28,427
2단계 ¹⁾	54,890	35,905	48,258	32,647
합 계	94,787	74,931	77,561	61,074

주: 1) 1단계(2022.9.15. ~ 10.31), 2단계(2022.11.7. ~ 12.3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실적 추이 등 사업추진 경과를 점검한 결과, 2022년 12월 6일 디딤돌대출을 제외한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그리고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일원화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¹¹⁾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게 된 배경으로, 안심전환대출 운영 중 제기된 형평성 문제 해소¹²⁾, 복잡한 정책모기지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구 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2023.1.30 ~ 2024.1.29(1년간 한시적 운영 예정)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대출 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차주 요건	소득	소득제한 없음(단, 우대금리 적용 시 별도 소득요건 충족 필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내
	주택보유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

10)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향 조정한 25조원의 공급목표 대비 31.2%

11)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출 상품으로 유지되고 있는 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는 2023년 통합개편 이후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두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12) 2022년 추진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55bp 인하된 수준의 금리로 출시되었는 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금리 조건이 유리하고,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의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에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구 분	특례보증자리론
금리수준 (2023.2.9. 기준)	· (일반형) 4.25(만기 10년) ~ 4.55(만기 50년)% · (우대형) 4.15(만기 10년) ~ 4.45(만기 50년)% *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연 3.25~3.55%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다만, 이와 같이 제3차 안심전환대출 사업의 추진 방식을 기존의 다른 정책모기지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것은 정부재정 출자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3.1.30. 출시된 특례보증자리론의 4월말 현재 공급실적을 보면, 5만 7,280건, 13조 1,311억원의 정책모기지가 공급되었는데, 이 중 상환 목적 모기지론의 공급 실적이 6조 4,991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특례보증자리론 공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월		3월		4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환	1,438	3,130	18,364	40,513	10,289	21,348	30,091	64,991
구입	871	2,042	11,144	26,830	11,518	27,809	23,533	56,681
보전	293	815	1,840	4,897	1,523	3,927	3,656	9,639
합계	2,602	5,987	31,348	72,240	23,330	53,084	57,280	131,311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급실적이 3월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공급실적의 증가는 정책모기지의 통합에 따른 효과라기 보다는 대환대상 대출의 요건, 차주의 소득, 주택가격 등 요건의 완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22년도에 제3차 안심전환대출 운영 중 제기된 형평성 문제 역시 안심전환대출이나 보증자리론의 금리구조 등 요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소가 가능한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기존의 다른 정책모기지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¹³⁾

13) 금융위원회는 특례보증자리론 통합운영의 필요성은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 해소, 특례보증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우대형)간 대출요건 유사성 및 상품 동질성에 기인하였으며, 당정

반면, 특정 목적 하에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모기지인 제3차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일부 요건이나 기준을 완화하는 범위를 넘어 상환용도 외에 안심전환대출 공급과 연관성이 없는 신규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반환과 같은 구입용도 및 보전용도까지 포괄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 집행된 정부재정 출자의 취지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정책모기지 체계의 단순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정 목적의 한시적 정책 사업인 안심전환대출까지 통합한 것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제3차 안심전환대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라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당초 사업 계획 당시 금리, 대환대상 대출의 요건 등 상품 구조를 설계하면서 예상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향후 특정 목적의 정부재정 출자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출자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의 개편 등 추진방식 변경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지원 정책사업의 설계 시 상반될 수 있는 이해관계 등 제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의 등을 통해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안심전환대출의 집행실적 부진 해소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신용 중심의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보증·유동화회사보증 등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보증공급 등 사업을 확대하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 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2022년도에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2021년말경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요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위탁보증¹⁾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액의 일부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 특례보증 사업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이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2021년 들어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보증한도 9.5조원의 잔여한도 중 2.85조원을 활용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1.1.18.~2021.12.31.까지 운영되었다.

2-1.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추진 상의 문제점

가. 현 황

이차보전 지원 사업²⁾은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및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에 계획현액 1,705억 8,300만원 중 463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1,242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이차보전지원	24,453	158,605	11,978	-	170,583	46,308	-	124,275	63,002

자료: 금융위원회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초기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2020년 4월 1일 출시된 후 12월 31일까지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이었으나 1년씩 2차례에 걸쳐 2년 연장되어 이차보전 총 지원기간은 3년이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2022년 1월 24일 출시된 후 2023.3월말 현재 대출 실행이 진행 중이며,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이차보전 총 지원기간은 2년이다.

2)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13

나. 분석의견

2021년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에 기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대환을 포함시킨 것은, 정부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한 문제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의 내용도 일부 개편되었는데,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경우 기간 연장에 따른 금리 조정과 은행부담률 조정에 한정된 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경우 금리 조정 이외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당초(2020.4월)	1차 연장(2021.4월)	2차 연장(2022.4월)
지원대상	코로나19 직·간접피해를 입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 활용중인 소상공인 전체	
대상 대출자금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	-
기업당 대출한도	3,000만원	-	-
지원내용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대출금리-1.5%)의 8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대출금리-1.5%)의 7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2.5%)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대출금리-2.5%)의 70%를 보전
은행부담률	20%	30%	30%
지원기간	1년	1년	1년
운영기간	2020.4.1. ~2021.12.31.	2021.4.1. ~2022.12.31.	2022.4.1. ~2023.12.31.
지원한도	3.5조원	-	-
이차보전 재원	603.75억원	484.18억원	341.52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프로그램	
	당초(2022.1월)	1차 연장(2023.1월)
지원대상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손실보전 금 수급자 추가(2022.8월)	기존 지원대상에 영세소상공인 이 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 인 포함
대상 대출자금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용 및 대환대출	좌동
기업당 대출한도	3,000만원 ※ 1,000만원→3,000만원 확대(2022.8월)	좌동
지원내용	평균 산출금리(4.5%)와 대출 적용 금리(1.5%) 간 차액의 70%를 보전	평균 산출금리(6.3%)와 대출 적용 금리(3.3%) 간 차액의 70%를 보전
은행부담률	30%	좌동
지원기간	1년	2년 (기 이용자는 1년 추가 지원, 신규 이용자는 2년 지원)
운영기간	2022.1.24. ~ 2023.3월말 현재 대출 실행 진행 중	
지원한도	총 4.8조원	총 2.4조원
이차보전 자원	총 1,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1월 출시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2021년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의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을 2021년 12월 추진된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과 2022년 5월 추진된 손실보전금 지급 사업의 수급자로 한정하여 추진되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4조 8,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목표로 하여 소요재원으로 2022년도 계획액 1,0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이차보전 지원금 집행액은 54억원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³⁾

3)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은 2021년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1.4조원), 중신용자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8조원), 고신용자의 경우 시중은행 이차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재원	2022				2023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1,000	-	6	15	33	67	121

주: 각 분기별 예산 집행액은 직전분기 이차보전 대출 취급실적에 대한 정산금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2022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당초 1년간 운영될 예정이었던 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사업을 개편하였는데,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대상 대출공급 목표 규모는 4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감축 조정되었으며,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가 아닌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

그러나,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추진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이 완료된 프로그램으로서,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큰 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개편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원대상 확대가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괴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된 집행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당초 예측과 달리 부진한 경우 지원 기준과 요건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양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전(4.8조원)으로 구성되는데, 고신용자에 대한 시중은행 이차보전이 금융위원회 소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이다.

4)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3.3월말 현재 1조 7,000억원 수준의 대출공급이 이루어져 2023년말까지는 지원 한도에 도달하여 대출 실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사업 개편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재원운용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사업 개편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이용자를 특정하여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 다만,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가 아닌)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이용자에 대해서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 방식을 대환 방식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이용 중인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대상 확대는 실질적으로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편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구분 없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사업 추진의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지원대상 요건도 독립적인 서로 다른 사업으로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편성된 예산액과 집행액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2회계연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재원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이차보전지원	24,453	158,605	11,978	170,583	46,308	-	124,275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24,453	58,605	11,978	70,583	40,898	-	29,685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	100,000	-	100,000	5,410	-	94,590

자료: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게 볼 때,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기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실상 전용하여 투명성을 저해한 문제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당초 서로 다른 금융지원 사업인 두 이차보전 사업을 분리하여 재원을 편성·관리하면서, 기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였다면,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소요 재원의 조달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으로 재원을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생각된다.

2-2.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보증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기본프로그램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1년 들어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기존 프로그램 보증한도 9.5조원의 잔여한도 중 2.85조원을 활용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⁵⁾은 상기 소상공인 대상 위탁보증 사업과 관련하여 피보증인인 소상공인이 채권기관에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채권기관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대위변제를 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계획현액 3,661억 2,600만원 중 1,83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829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전용	계획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366,126	366,126	-	-	366,126	183,137	-	182,989	364,618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위탁보증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보완하는 등 보증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16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특징을 보면, 보증비율이 95%로 일반보증의 보증비율 70~100%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고, 일반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차입금상환능력·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서 상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등 심사체크리스트 저촉 여부에 대해서 대출기관인 시중은행이 심사하도록 하였다.

[일반보증과 소상공인위탁보증 비교]

구 분	일반보증	소상공인위탁보증	
		기본 프로그램	임차 프로그램
지원대상	일반기업 (보증특성에 따라 상이)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 기업인 소기업(도박,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기본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 영위 임차 기업
지원한도	운전 30억원 (시설 100억원)	1,900만원	1,900만원
보증비율	70~100%	95%	
보증기간 및 구조	- 단기(1년)·장기(3년이 상)대출 - 보증특성별 상환구조 상이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5년 만기) ※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만기)에서 거치기간 1년 연장(2022.4월)	
보증료율	0.5~3.0%	- 1년차 0.3% - 2~5년차 0.9%	- 1~2년차 면제 - 3~5년차 0.4%
보증심사	- 신용도·차입금상환능력 ·대표자·재무건전성·미 래성장성 여부 심사 - 모든 보증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 수탁은행에서 심사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금융 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 조회서상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심사 - 현장조사 미실시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평균적인 보증비율은 일반보증에 비하여 높은 반면, 보증 심사의 절차 및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동 보증사업을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보증 사업에 비하여 부실 및 대위변제 발생의 리스크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⁶⁾과 대위변제율이 2022년말 현재 각각 3.9%, 2.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6%p 증가하여 2022년말 기준 일반보증의 부실률 2.0%, 대위변제율 1.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3년 1분기 중 급격하게 증가하여 분기말 현재 부실률은 9.3%, 대위변제율은 4.9%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소상공인위탁보증 보증규모 및 부실 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1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증공급(신규)	32,927	41,382 ¹⁾	-	-	-	-	-
보증잔액(A)	32,689	71,552	70,696	69,210	67,635	65,082	61,235
부실규모(B) ²⁾	73	1,251	389	867	1,421	2,539	1,404
부실률(B/A) ³⁾	0.2	1.7	2.2	2.5	2.8	3.9	9.3
대위변제액(C) ²⁾	15	837	350	823	1,301	1,831	743
대위변제율(C/A) ³⁾	0.04	1.2	2.0	2.4	2.6	2.8	4.9

주: 1) 2021년말 사업 종료되었으며, 2021년 실적에 2022.1월 발급분(2021년 접수분) 15억 포함

2) 분기별 부실규모 및 대위변제액은 해당연도 누적금액

3) 분기별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은 연환산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위탁보증 및 일반보증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1분기)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0.2	1.7	3.9	9.3
	대위변제율	0.04	1.2	2.8	4.9
일반보증	부실률	2.4	2.0	2.0	3.2
	대위변제율	2.5	2.0	1.9	2.1

자료: 신용보증기금

6)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용기업의 부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에 따른 사유 발생 여부로 판단한다. 보증기업이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보증기업이 보증부대출이 이자를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수탁기관이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등 1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기본프로그램의 대출 만기구조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만기 5년)으로 2023년 5월부터는 이자 상환 외에 대출원금 상환의 부담이 현실화되는 시기로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대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2022년도부터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이용 중인 신용도 취약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경영지도 세부사업⁷⁾ 내 사업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도 예산은 일반용역비 42억 7,500만원이다.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레벨업 프로그램	체인지업 프로그램
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내용	(공통) 부채, 신용상태 개선솔루션 제시 등 신용관리 자문서비스	
	(개별) 경영애로 진단, 환경분석, 영업활성화 방안 등 경쟁력 강화 컨설팅	(개별) 실패원인 분석, 재창업 전략, 부채 상환계획 설계 등 사업재기 컨설팅
추진실적 (2022)	2,865건	111건
	예산 42.75억원(37.1억원 집행)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과 같은 특화된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간 신용등급, 대위변제율 등 리스크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하는 등 컨설팅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도입 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컨설팅 프로그램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보증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코드: 일반회계 2431-307

2-3.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추진 상의 문제점

가. 현 황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2년에 지속되던 고금리 기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추진된 사업으로, 이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액의 일부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800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수납되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전입금(소상공인 대환보증)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전입금	105,000	1,005,000	1,005,000	1,005,000	1,005,000	-	-	83,700
소상공인 대환보증	-	680,000	680,000	680,000	680,000	-	-	80,000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으로 편성된 6,800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은 신용보증기금이 기존 고금리대출의 대환으로 실행되는 신규 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수행함에 따라 증가하는 운용배수를 12.5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국회 증액으로 1조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추가함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예산 800억원을 반영하였다.

8) 정부제출안은 2022년 7조 5,000억원(1조원은 2023년 공급예정)에 운용배수 12.5배를 적용하여 6,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800억원이 증액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적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는 바, 당초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지원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과도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집행실적을 추후 출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2023년말까지 8조 5,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하여 90%를 보증하여 7조 6,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2022년말 현재까지 2,45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하여 90%인 2,212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데 그쳐 공급실적이 부진하였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보증 공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4월말
보증공급(신규)	2,212	3,103
보증잔액(A)	2,208	5,283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에 따라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을 내용으로 사업 개편에 대해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당초(2022.8월 발표)	사업개편(2023.2월 발표)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부동산 등 일부 업종 제외)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부동산 등 일부 업종 제외)
대상 대출자금	2022.5.31.까지 취급된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	좌동

구분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당초(2022.8월 발표)	사업개편(2023.2월 발표)
차주당 한도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금리상한	(1~2년차) 최대 5.5% (3~5년차) 은행채 1년물 (AAA)+0.2%p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은행채 1년물 (AAA)+0.2%p
상환구조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90%	좌동
보증료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7%로 인하 ※ 최초 대출시점에서 전액 납부시 15% 할인
보증공급방식	금융기관 위탁보증	좌동
운영기간	2022.9.30. ~ 2023.12.31.	2022.9.30.~2024.12.31
대환규모	총 8.5조원	총 9.5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지원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상승세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 요건]

구분	당초	개편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부 요건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022.8.29. 이전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좌동)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기조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기준 및 요건 등 내용을 개편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피해 여부는 당초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추진 목적과 취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원대상을 테두리짓는 주요한 요건에 해당하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부터 전제되었던 사항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0월 이후 202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리상승 기조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일반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의 사업 개편에 대해서는 당초 예기치 못한 상황적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확대는 부진하였던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를 감안하여 이를 수용한 정책적인 판단에 일응 타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소상공인 일반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은 그 필요성, 대상자의 규모와 소요재원, 방식과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다른 지원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거쳐 사업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사업 개편은 당초 일반회계전입금 예산 편성의 목적 및 취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주요한 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례가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을 추후 출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개편 내용 중에는 대환 대상 대출에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포함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

위, 사업추진의 취지 및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과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개편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사업대출 외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채무는 기업의 채무로 기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 등 사업목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업적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사업 추진의 목적과도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부실위험이 높은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보증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향후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은 2023년 4월말 현재 3.1%, 대위변제율은 0.2%이다.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소상공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예산액은 2023년 예상 대위변제 이행률을 3.31%로 설정하여 편성되었는데,⁹⁾ 이는 유사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과거 국민행복기금 바퀴드림론¹⁰⁾의 1차년

9) 2022년 예상 보증공급액(6조 7,500억원) × 2023년 예상 대위변제 이행률(3.31%)

10) 바퀴드림론은 200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급된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운영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이며,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대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 대위변제율 1.5%(2009년)와 2차 년도 대위변제율 5.1%(2010년)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바뀔드림론의 1차 연도 대위변제율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대위변제 예산을 편성하였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부실 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4월 말
보증잔액(A)	2,208	5,283
부실규모(B)	2	54
부실률(B/A)	0.1	3.1
대위변제액(C)	-	4
대위변제율(C/A)	-	0.2

주: '23. 4월말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은 연환산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2022.5.31.까지 취급된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실위험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행복기금 바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5년차를 경과하면서 20%를 넘어서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누적 대위변제율은 29.9%, 회수액을 반영한 대위변제율도 17.1%에 달하였다.

[바뀔드림론 지원실적 및 대위변제율]

(단위: 건,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누계
지원건수	14,825	16,545	46,299	62,734	57,040	17,296	9,816	9,428	4,680	6,880	5,639	-	-	251,182
공급금액	1,430	1,683	4,755	6,727	6,226	2,136	1,257	1,344	763	1,175	976	-	-	28,472
누적 대위 변제율	1.5	5.1	5.9	9.1	16.3	23.8	27.2	28.1	28.7	28.6	28.7	29.5	29.9	-
회수액 반영 대위 변제율	1.5	5.0	5.6	8.6	15.2	21.6	23.1	21.8	20.4	18.9	17.9	17.6	17.1	-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동 사업의 운용배수는 부실률 8%를 전제로 하여 12.5배로 설정한 것이나, 향후 실제 부실률은 이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위변제율 역시 일정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보증심사를 수행하는 일반보증 방식이 아니라 대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는 보증방식이다.¹¹⁾

이와 같은 위탁보증 방식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반면, 보증심사의 절차 및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일반보증에 비하여 부실 및 대위변제 발생의 리스크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보증률도 90%로, 일반보증의 보증률 75~100%보다 평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보증 방식의 보증사업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근래 들어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업 초기 시기를 지나면서 일반보증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이렇게 볼 때,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도 향후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과 같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부실위험이 높은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보증리스크가 큰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11) 일반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차입금상환능력·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위탁보증은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서 상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등 심사체크리스트 저축 여부에 대해서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이 심사한다.

12) 2023년 1분기 현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9.3%, 4.9%이며, 일반보증의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3.2%, 2.1%로 나타났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 분석

가. 현 황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사업¹⁾은 한국산업은행에 정부재정을 출자하여 뉴딜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투자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예산현액 6,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¹⁾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600,000	600,000	-	-	600,000	600,000	-	-	300,000

주: 1)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예산

1.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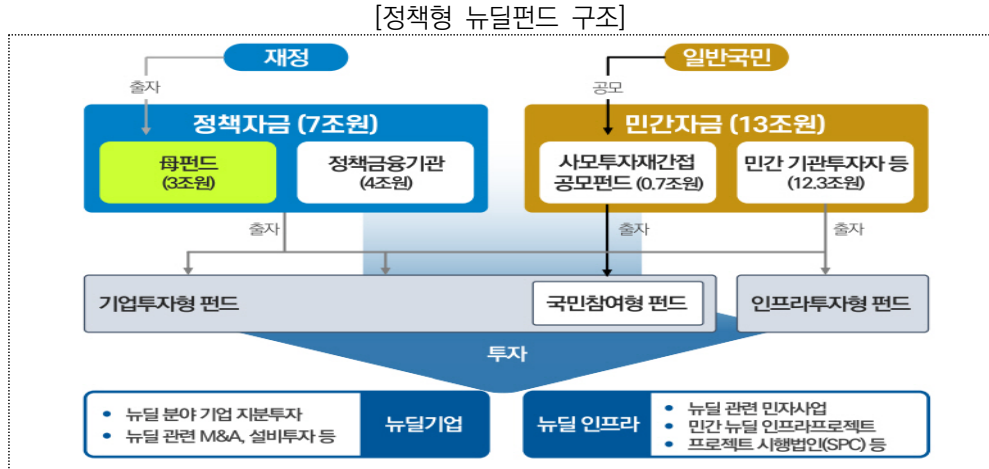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을 발표하였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중 과잉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 등을 목표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운영 방안”(2020. 9. 3.)을 발표하였다.

뉴딜펀드의 기본방향은 ① 2021~2025년 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②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며,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과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재정출자를 통해 3조원 규모의 모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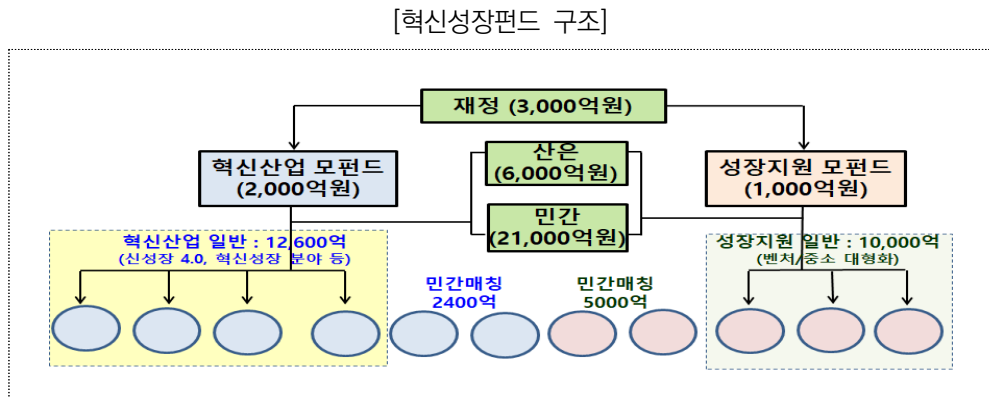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2414-318

(母)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자금 4조원 및 민간매칭 13조원으로 20조원 규모의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료: 한국산업은행

다만, 2023년도부터는 혁신성장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혁신성장펀드는 뉴딜펀드를 새정부 방향에 맞는 신산업·전략산업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다변화하고 민간 주도의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재편한 것으로, 혁신산업지원분야와 성장지원분야로 구분하여 운용 중에 있다.²⁾



자료: 한국산업은행

2) 혁신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재정 1.5조원, 정책금융 3조원, 민간자금 10.5조원으로 총 15조원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2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성장펀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정부재정 출자금 예산 3,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이후에는 혁신성장펀드 체계에 따라 정부재정 출자와 운용사 선정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 체계 하에서 2021년도 출자분, 2022년도 출자분을 토대로 조성된 자펀드가 결성·운용 중에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³⁾

나. 분석의견

첫째,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중 일부 프로젝트 자펀드는 장기간 결성이 지연되고 있고 매칭 대기 상태로 유보되어 있는 정부재정의 규모도 크므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해당 자금을 향후 정책펀드(혁신성장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도 제2차 운용사 선정공고가 3분기가 끝나가는 9월 중순에야 이루어져 그 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정책펀드 운용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도 재정출자 모펀드를 기반으로 목표 결성액 4조 297억원 대비 6조 3,391억원이 결성되었으며, 2022년도 재정출자 모펀드를 기반으로 목표 결성액 4조 6억원 대비 4조 3,465억원이 결성되어 펀드 조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재정 출자 연도	자펀드 결성								합 계	
	재정		정책(산은)		정책(성장)		민간			
	계획	결성	계획	결성	계획	결성	목표	결성	목표	결성
2021	5,100	4,733	6,122	6,122	2,000	2,000	27,075	50,536	40,297	63,391
2022	6,000	4,065	6,100	5,199	2,000	2,000	25,906	32,201	40,006	43,465
합계	11,100	8,798	12,222	11,321	4,000	4,000	52,981	82,737	80,303	106,856

주: 2023.4월말 현재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자펀드별로 투자기간과 존속기간이 다르나, 투자기간은 통상 결성시기부터 4~5년이고, 존속기간은 통상 10년 이내이나 20년에 달하는 펀드도 있다. 가장 최근 2023.3월 조성된 자펀드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투자기간은 2028.3월, 존속기간은 2033.3월이다.

다만,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별로 집계된 세부 결성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4월말 현재 기준으로 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펀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젝트형으로서 운용사 선정 중인 자펀드가 3개이고, 블라인드형으로서 운용사는 선정되었으나 자금 결성이 진행 중인 자펀드가 5개이다.

[미결성 자펀드 현황]

(단위: 억원)

재정출 자 연도	선정 공고	유형	운용사	자펀드 결성							
				재정		정책(산은)		정책(성장)		민간	
				계획	결성	계획	결성	계획	결성	목표	결성
2021	정시	프로젝트	선정 중	366	-	-	-	-	-	680	-
2022	1차	프로젝트	선정 중	400	-	-	-	-	-	600	-
	2차	프로젝트	선정 중	400	-	-	-	-	-	1,600	-
	2차	블라인드	○○캐피탈 등	197	-	157	-	-	-	646	-
	2차	블라인드	◇◇◇자산운용	187	-	149	-	-	-	664	-
	2차	블라인드	△△△자산운용	187	-	149	-	-	-	664	-
	2차	블라인드	□□□자산운용	187	-	149	-	-	-	664	-
	2차	블라인드	■□■자산운용	377	-	297	-	-	-	1,326	-
합 계				2,301	-	901	-	-	-	6,844	-

주: 2023.4월말 현재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펀드 결성의 지연은 투자 지연으로 이어져 정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펀드 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2021년도 정시 운용사 선정공고(2020.12.29.)에 따른 프로젝트 펀드 1건, 2022년도 제1차 운용사 선정공고(2022.1.7.)에 따른 프로젝트 펀드 1건은 운용사 선정 및 펀드 결성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두 펀드의 경우 모두 인프라투자형⁴⁾ 펀드로 인프라투자 시장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이후 고금리에 따른 자본시장 및 PF 금융시장 위축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크고, 장기-고위험이 수반되는 인프라펀드를 그린, 디지털 등 한정된 영역 위

4) 인프라투자형 펀드는 경제활동기반시설·사회서비스제공 시설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간 뉴딜 인프라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행법인(SPC) 등에 투자한다.

주로 결성 추진함에 따라 민간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자펀드 출자분야 선정 시 시장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분야별 출자목표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미결성된 프로젝트 펀드는 2023년까지 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프로젝트 펀드 운용사의 신청과 선정이 블라인드 펀드와 달리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⁵⁾ 상기 두 펀드의 경우 미결성 상태로 경과되고 있는 기간이 장기간이고, 매칭 대기 상태로 유보되어 있는 재정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해당 자금을 향후 정책펀드(혁신성장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22년도 제2차 운용사 선정공고(2022.9.19.)에 따르면, 블라인드 펀드의 결성시한은 2023년 4월 30일.이고 2개월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결성시한은 2023년 6월 30일인데, 2022년도 제2차 선정 블라인드 펀드 12개 중 2023년 4월말 현재 결성 중인 5개 펀드의 결성이 시한에 맞추어 5~6월 중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출자연도 다음연도의 상반기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인 바, 운용사 선정공고를 출자 연도의 3분기가 끝나가는 9월19일에야 실시한 것은 그 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정책펀드 운용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펀드의 소극적인 투자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정책펀드의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입된 정부재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펀드에 대해서는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4월말 현재 2021년도 재정출자 모펀드를 기반으로 결성된 자펀드는 결성액 6조 3,391억원 중 2조 4,657억원을 투자하여 38.9%의 투자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 재정출자 모펀

5) 프로젝트형은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해놓고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이고, 블라인드형은 자금을 먼저 모은 이후 투자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형의 경우 운용사가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선정공고에 응모하고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면 자금을 결성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운용사의 응모신청 접수와 선정이 정해진 기한 없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블라인드형의 경우 일정한 신청접수 기간 내에 선정공고에 응모한 운용사 중에서 운용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가 자금을 결성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선정공고에 제시된 접수기한 내 응모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도 선정공고에 제시된 발표 일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드를 기반으로 결성된 자펀드는 결성액 4조 3,465억원 중 7,135억원을 투자하여 16.4%의 투자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투자 현황]

(단위: 개, 억원, %)

재정출자 연도	자펀드 투자						
	유형	운용사수 (자펀드수)	결성액 (A)	투자액 (B)	투자집행률 (B/A)	투자 기업수	미투자금액 (A-B)
2021	블라인드	48	58,271	20,298	34.8	608	37,973
	프로젝트	13	5,120	4,359	85.1	32	761
	합계	61	63,391	24,657	38.9	640	38,734
2022	블라인드	26	39,910	3,805	9.5	41	36,105
	프로젝트	6	3,555	3,330	93.7	9	225
	합계	32	43,465	7,135	16.4	50	36,330

주: 2023.4월말 현재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자펀드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펀드로서 2023년 4월말 현재 투자 집행률이 20%⁶⁾에 미치지 못하는 자펀드가 7개로 나타났고, 투자 집행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자펀드가 3개이고, 투자 실적이 전혀 없는 자펀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집행률 저조 자펀드 현황]

(단위: 억원, %, 개)

유형	운용사	펀드결성										펀드투자			
		재정		정책(산은)		정책(성장)		민간		목표 결성 금액	펀드 결성 금액	결성 시기	투자액	집행률	투자 기업수
		계획	조성액	계획	조성액	계획	조성액	목표	조성액						
블라인드	□□□	124	124	134	134	144	144	759	1235	1,161	1,637	'21.11	240	15	3
블라인드	△△△	59	59	64	64	68	68	293	389	484	580	'21.10	45	8	4
블라인드	○○○	286	286	226	226	-	-	1,126	1126	1,638	1,638	'21.9	310	19	8

6)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의 투자기간이 통상 결성일로부터 4~5년임을 감안하여 연간 투자 집행률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단위: 억원, %, 개)

유형	운용사	펀드결성										펀드투자			
		재정		정책(산은)		정책(성장)		민간		목표 결성 금액	펀드 결성 금액	결성 시기	투자액	집행률	투자 기업수
		계획	조성액	계획	조성액	계획	조성액	목표	조성액						
프로 젝트	○○○	50	50	-	0	-	-	93	100	143	150	'22.3	13	9	3
블라 인드	■□■	28	28	47	47	71	71	354	204	500	350	'21.12	50	14	2
블라 인드	◇◇◇	20	20	60	60	70	70	100	350	250	500	'21.12	-	-	-
블라 인드	●●●	-	0	50	50	50	50	900	900	1,000	1,000	'21.12	180	18	3

주: 2023.4월말 현재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펀드의 소극적인 투자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정책펀드의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입된 정부재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는 투자기간이 통상 4~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투자 환경, 수익률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펀드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 시 민간출자자 출자액의 10% 이내에서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후순위 보강 등 출자조건상 민간투자자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펀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에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출자하는 것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업추진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정책펀드 사업 추진 시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재원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를 전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말 현재 기준으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6개 공공기관이 7,75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2개 정책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공공기관명	운용사 (성격)	투자액	투자액 납입시기	투자분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공무원 연금공단	AAA (신기술투자조합)	150	2021.9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BBB (벤처투자조합)	150	2021.10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국민 연금공단	AAA (신기술투자조합)	450	2021.9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CCC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200	2021.12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DDD (벤처투자조합)	375	2022.10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EEE (벤처투자조합)	800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FFF (벤처투자조합)	34	2023.03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AAA (신기술투자조합)	200	2021.9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GGG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1.10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HHH (벤처투자조합)	200	2021.12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III (벤처투자조합)	250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EEE (벤처투자조합)	250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JJJ (벤처투자조합)	150	2022.12	뉴딜·혁신성장 분야, 지역 중소중견기업
	중소 기업은행	KKK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30	2021.6	도시재생(폐기물 리사이클링)
		LLL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50	2021.8	빅데이터
		MMM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30	2021.10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단위: 억원)

구분	공공기관명	운용사 (성격)	투자액	투자액 납입시기	투자분야
기타공공기관	중소 기업은행	GGG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00	2021.10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CCC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00	2021.12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NNN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00	2021.12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OOO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200	2022.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PPP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30	2022.4	뉴딜분야, 지역 중소중견기업
		QQQ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100	2022.7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RRR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00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SSS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00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TTT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30	2022.12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
	한국 수출입은행	UUU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250	2021.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NNN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1.12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PPP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125	2022.4	뉴딜분야, 지역 중소중견기업
		RRR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400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VVV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300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AAA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229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SSS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275	2022.11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합 계			7,758	-	-

자료: 한국산업은행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에 있어서 한국산업은행이 투입하는 자원은 정책자금으로서 정부재정 출자분과 함께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책형 뉴딜펀드에 정책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해 계획된 자원의 규모는 1조 2,222억원이고, 자펀드 결성에 매칭된 자원의 규모는 1조 1,009억원 규모인데,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에 민간 기관투자자로서 투자한 금액 3,049억원은 한국산업은행이 투입한 정책자금 규모의 27.7%에 해당하여 그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금융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 조성, 유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에 이들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할 때 민간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지위로 출자하는 것은 정책형 펀드의 사업추진체계와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형 뉴딜펀드 자원조성 방안]

투자자	투자목적	비고	자원규모
정부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	투자위험 부담	5년간 3.0조원(연 0.6조원)
정책금융기관			5년간 4.0조원(연 0.8조원)
은행·연기금	투자 수익 창출	자펀드 조성시 민간 매칭	5년간 13.0조원(연 2.6조원)
일반 국민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등	

자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0. 9. 3.

향후 정책형 뉴딜펀드와 같은 정책펀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자원은 민간자금의 조성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되⁷⁾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7)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침체 등으로 민간 투자자원 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활한 투자자원 조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정책금융기관 자기에 우대조건을 붙여서 유치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신규 편성되었으며, 6,000억원의 출자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조치 등에 따른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협약금융회사 보유 대출²⁾에 대한 원금 조정,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의 감면 및 조정, 거치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이다.

[2022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600,000	-	-	600,000	600,000	-	-	280,00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새출발기금(SPC)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³⁾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⁴⁾을 지원하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2432-303

2)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된다.

3) 채무조정 신청 시, 새출발기금이 해당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4) 채권매입 없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해당 차주의 회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채권 매각

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 출범하였다.

대출채권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18조원 중 20%인 3조 6,000억원을 정부 재정 출자로 충당하고, 14조 4,000억원은 한국자산공사의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정부 출자소요분 중 일부인 6,00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⁵⁾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및 부실우려차주(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외 업종(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
지원규모	총 30조원
대상대출	협약금융회사 보유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대출 무관)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 제외 * 총 15억 한도(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금리감면 등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 원금조정 無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부실차주의 담보부채무 및 부실우려차주 채무: 거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및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
지원기간	2022.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기초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채권매입 없는 채무조정 시에는 매입채권이 투입되지 않는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부동의 시 보증기관이 조기 대위변제를 실시하고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하며 보증기관이 부동의할 경우 보증기관이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한다.

- 5) 금융위원회는 30조원(한국은행 추정 잠재부실 규모 72조원의 약 40% 수준)의 대출채권을 매입가율 60%(담보·보증부 채권액은 채권원금의 약 85%, 신용대출은 채권원금의 0~35%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개인사업자 보유 대출채권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매입가율을 채권원금의 60% 수준으로 설정)를 적용하여 18조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예상부도율 20%를 적용한 매입분을 고려하면 공사에 총 3조 6,000억원의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분석의견

첫째, 새출발기금 사업은 제5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재정의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과도한 출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에 따라 적절한 출자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022년 6조원, 2023년 9조원, 2024년 9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추진 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2.10월~	2023	2024	2025	합 계
매입목표	6 (3.6) ¹⁾	9 (5.4) ¹⁾	9 (5.4) ¹⁾	6 (3.6) ¹⁾	30 (18) ¹⁾
재정출자	1.1 (현물출자0.5 포함)	0.28	3조 6,000억원 중 잔여분 2조 2,200억원 편성 계획		3.6
공사채발행	2.5	2.9	5.4	3.6	14.4

주: 1) 매입가율 60%를 적용한 매입가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현황을 보면, 2022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매입건수 2만 5,436건에 매입 채권가액은 2,952억원이고, 2023년의 경우 1분기 말까지 매입건수 5만 952건에 매입 채권가액은 5,692억원으로, 2023년 1분기 말까지 전체 매입 채권가액은 8,644억원 규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현황 I]

(단위: 건, 억원)

구 분		신청현황 ¹⁾		매입현황 ²⁾		
		채권가액	신청건수	채권가액	매입건수	매입가액
2022	10월 ³⁾	11,520	7,958	-	-	-
	11월	5,127	3,607	749.6	7,772	363.8
	12월	4,288	3,130	2,202.3	17,664	499.5
	소계	20,935	14,695	2,951.9	25,436	863.3

(단위: 건, 억원)

구 분		신청현황 ¹⁾		매입현황 ²⁾		
		채권가액	신청건수	채권가액	매입건수	매입가액
2023	1월	4,022	2,829	1,692.7	13,769	405.5
	2월	4,208	2,650	2,221.6	22,040	610.8
	3월	5,120	3,263	1,777.5	15,143	825.7
	소계	13,350	8,742	5,691.8	50,952	1,842

주: 1) 2023년 1분기말 기준 새출발기금(중개형·매입형) 신청현황으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확정되어 추후 변동 가능

2) 2023년 1분기말 기준 매입실적으로, 매입건수는 부실채권 인수계좌 수 기준 산출

3) 사전신청 기간(9.27~9.30) 포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매입 신청부터 매입이 이루어지기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2022년도 매입 신청된 채권가액이 2조 935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에 2조 5,000억원 규모의 캠퍼스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정부 재정 출자분을 투입하여 채권가액 기준 6조원의 채권을 매입하려던 당초 계획 대비⁶⁾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⁷⁾

이는 2022년 9월 27일 제5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와 상황이 변동되었기 때문으로,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2022년 9월 종료될 경우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새출발기금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⁸⁾

6) 2022년 6조원, 2023년 9조원, 2024년 9조원, 2025년 6조원

7) 참고로, 2022년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채 발행이 없었으며, 공사는 2023년도에는 하반기에 1조 1,140억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2022년도에는 하반기 채권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공사채 발행 자체의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사업 집행 부진으로 인해 공사채 발행의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현황]

구 분	내 용											
최초 2020.3.	쏜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시행(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 시행('20.4~.)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한정 - 적용대출: 2020.3.31. 이전에 대출받은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대출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등 제외 - 지원내용: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상환 유예											
1차 2020.9.	쏜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1차 연장(추가 6개월)											
2차 2021.3.	쏜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2차 연장(추가 6개월)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21.4~.) 마련 -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3년이상) -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유예기간중 발생 이자는 상환방법 ·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 차주가 당초보다 조기상환을 원할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 - 컨설팅 · 협의를 거쳐 최종 상환방법 · 기간 등 결정은 차주가 선택											
3차 2021.9.	쏜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3차 연장(추가 6개월)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착륙 내실화 방안('21.9~.) 마련 - 상환계획 조정: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상환 최대 5년 지원 - 사전절차: 지원 종료 2개월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 - 컨설팅: 지원 종료 1~2개월 前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 사후절차: 상환 어려움 발생시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모니터링											
4차 2022.3.	쏜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4차 연장(추가 6개월)											
5차 2022.9.	쏜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5차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table><tr><th colspan="2">차주 구분</th><th>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th><th>1:1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th></tr><tr><td>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td><td>124.7조원 (53.4만명)</td><td>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금융권 자율협약 전환)</td><td rowspan="2">차주가 희망할 경우, 대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td></tr><tr><td>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td><td>16.7조원 (3.8만명)</td><td>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td></tr></table>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원 (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대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원 (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원 (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대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원 (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새출발기금 사업은 제4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2022년 9월에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추가적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새출발기금 사업의 추진 및 집행 실적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 정책이며, 동 조치가 취해질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할 유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시기적으로 이미 추가적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⁹⁾ 새출발기금의 사업 추진과 추가적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상호 연계하여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정부는 2022년 9월 15일 예산에 편성된 현금출자금 6,000억원을 전액 일시 출자하였으며, 제5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결정된 시점 이후인 2022년 11월 3일에도 5,000억원 상당의 한국도로공사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현물 출자하였는 바,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한 출자금이 집행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유보됨으로써 정부재정 출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 편성된 출자금이라 하더라도 정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출자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출자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정부재정 출자를 기반으로 금융지원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의 추진 경과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에 따라 적절한 출자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새출발기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자금 예산 편성 시 적용된 매입가율에 비하여 실제 매입가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가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새출발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재정 출자금 예산이 적절한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다.

9)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말 종료예정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일시상환 부담이 없도록 연차별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금융권과 추가 연장 조치를 협의하며, 채무구조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022.5.2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은 채권의 유형과 부실 정도에 따라 매입형은 부실차주의 보증부채무 및 신용채무, 중개형(금융회사 등의 기반)은 부실우려차주의 모든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부채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금융회사의 부동의 또는 약정 실효 등으로 중개형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전환된다.

[채권 유형 및 부실 정도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방식]

구 분	담보 채무	보증부 채무	무담보(신용) 채무
부실우려 차주	중개형 채무조정(금융회사 등의 기반)		
부실 차주			
		매입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매입)	

주: 중개형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전환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형 채무조정의 채권 매입은 신청 이후 채무조정안 송부, 매각명세 확인, 대상 확정, 채권 평가, 계약체결명세 확인, 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채권의 매입가액은 회계법인을 통한 채권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프로세스]

구 분	내용
채무조정안 (임시) 송부	- 새출발기금→채무자: 채무자 지원신청 정보 및 신청원 정보 활용하여, 채무조정 금리 및 감면율 등 안내
매각명세 확인	- 새출발기금: 매각명세 업로드 - 금융기관: 매각제외채권 포함 여부 등 매각명세 확인
대상 확정	- 금융기관: 매각자료 작성 및 업로드
채권 평가	- 회계법인: 채권 평가
계약체결명세 확인	- 새출발기금: 계약체결명세 업로드 및 이의제기 건에 대한 재평가 진행 - 금융기관: 계약체결명세 최종 확인 및 이의 회신
양수도계약 체결	- 새출발기금: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 금융기관: 양수도계약서 확인 및 매각요청 공문 회신 등
후속조치	- 금융기관→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에 인계한 전산정보 입력 → 계약서류(실물) 및 채권원인서류 인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런데,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매입가율이 2022년 29.2%, 2023년(1분기 말) 32.4% 수준으로 출자금 예산 편성 시 정부가 제시하였던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 60%의 매입가율은 담보·보증부 채권의 매입가율을 85%, 신용대출 채권의 매입가율을 0~35% 수준으로 예정하고 이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분기까지 매입한 채권 중 무담보부 채권이 채권가액 기준으로 전체 매입채권 가액 8,644억원 중 5,311억원으로 61.4%이고, 담보·보증부 채권이 3,333억원으로 38.6% 수준이며, 매입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입건수 7만 6,388건 중 무담보부 채권이 6만 2,931건으로 82.4%이고, 담보·보증부 채권이 1만 3,529건으로 17.7% 수준이다.

또한, 담보·보증부 채권의 매입가율도 2021년 평균 42.9%, 2022년 34.1%로 당초 정부 출자금 산출시 적용된 담보·보증부 채권의 매입가율 8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현황 II]

(단위: 억원, 건, %)

구 분		매입현황 ¹⁾			
		채권가액(A)	매입건수	매입가액(B)	매입가율(B/A)
2022	무담보부	2,061	22,817	481.3	23.4
	담보·보증부	890.9	2,691	382	42.9
	소계	2,951.9	25,436	863.3	29.2
2023	무담보부	3,250.2	40,114	1,008.4	31.0
	담보·보증부	2,441.6	10,838	833.7	34.1
	소계	5,691.8	50,952	1,842.1	32.4

주: 1) 2023년 1분기 말 기준 매입실적으로, 매입건수는 부실채권 인수계좌 수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새출발기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 출자금 산출 시 적용된 매입가율은 상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무담보부 채권에 대한 매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담보·보증부 채권에 대한 매입가율이 과다 평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다 출자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정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가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새출발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재정 출자금 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¹⁾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의 상장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상장주선·지정자문인·외부감사수수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추진되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코넥스협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7억 4,8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748	748	-	-	748	748	-	-	378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코넥스는 코스닥 진입이 어려운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하여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Pre-KOSDAQ 시장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의 선순환 도모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7월 개장되었다.

코넥스 상장제도는 지정자문인제도, 상장심사 기간 단축, 회계기준 및 지배구조 준수 의무 완화, 지정기관투자자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제도 개요(특징)]

구분	주요내용
지정자문인제도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용이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장기업에 자본시장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조언·지도, 공시 및 신고 대리, 기업의 정보생성 및 주식의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
상장심사 기간 단축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상장일까지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데 반해 코넥스시장의 경우는 15일 이내로 단축
회계기준 및 지배구조 준수의무 완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 선임의무 면제
지정기관 투자자제도	지정기관투자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주식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상장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 가능

자료: 코넥스 홈페이지(konex.krx.co.kr)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성

또한, 신규상장 요건과 관련하여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그 밖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코넥스 신규상장 요건]

구분	주요내용
외 형 요 건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주식 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질적요건	-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 ※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

자료: 코넥스 홈페이지(konex.krx.co.kr)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성

나. 분석의견

코넥스는 코스닥 등 다른 자본조달 시장과 함께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별도로 전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운영 방안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실집행 저조 등과 관련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코넥스 신규상장 실적이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에 2022년도에는 코넥스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데, 코넥스 신규상장수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코넥스협회의 국고보조금 실집행률도 개선되어 전액 교부, 집행되었다.

[코넥스 신규상장사 수 추이]

(단위: 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코넥스 신규상장사 수	49	50	29	21	17	12	7	14

자료: 코넥스협회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1,235	800 [394]	64.8 [31.9]	64.8 [31.9]	-	435
2021	1,235	500 [362]	40.5 [29.3]	40.5 [29.3]	-	735
2022	748	748 [748]	100.0 [100.0]	100.0 [100.0]	-	-

자료: 금융위원회

앞서, 2022년 1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활성화

방안이 코넥스 신규상장사 수의 증가와 국고보조금 집행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신규 상장 확대	이전상장제도 개편	· 신속이전상장 제도 재무 요건 완화(매출증가율 20%→10%p 경감) · 재무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 신설 · 코스닥 예비상장기업 중 영업성과, 재무안정성 등이 일정 수준을 하회하는 기업은 코넥스 경유 유도
	상장유지부담 완화	· 회계·공시 부담 완화, 유동성공급(LP)·공시대리 기간 단축 · 상장 10년 경과 시 거래 정지하는 장기잔류법인 관리 제도를 재무 구조 부실기업에만 적용
투자자 불편 해소	기본예탁금 규제 폐지	·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 폐지
	투자접근성 개선 등	· 홈트레이딩시스템 검색·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확대
	지분분산확대 유도	· 지분 분산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코스닥 이전상장 인센티브 부여 · 지분분산 정도에 따라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코넥스 상장기업 지원 강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코스닥 이전 상장 지원	·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시 이전상장 정례 컨설팅 제공, 상장 심사·신규상장수수료 등 면제 등
	공시·회계 교육 등 지원	· 코넥스 기업에 대해 공시·회계 교육, CEO 간담회 기회 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2022년도 코넥스 상장 신청 및 상장이 11월부터 연도말까지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코넥스 보다는 코스닥 직상장을 도모하다가 2022년도 하반기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자 그 대안으로 코넥스 상장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22년도 코넥스 신규상장 현황]

상장기업 연번	상장신청일	상장일
1	2021.12.30	2022. 1.21
2	2022. 5.20	2022. 6.15
3	2022. 6.24	2022. 7.20
4	2022. 7. 7	2022. 7.27
5	2022. 9. 5	2022. 9.27
6	2022. 9.29	2022.10.24
7	2022.11.16	2022.11.29
8	2022.11.11	2022.11.30
9	2022.11.30	2022.12.21
10	2022.11.29	2022.12.21
11	2022.11.11	2022.12.23
12	2022.11.21	2022.12.23
13	2022.11.10	2022.12.28
14	2022.12. 8	2022.12.28

자료: 한국거래소

또한, 2022년도에 신규상장사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코스닥 이전상장사 수는 반대로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2022년도 IPO 시장 위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사 수 추이]

(단위: 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코스닥 이전상장사 수	8	11	7	12	12	12	13	6

자료: 코넥스협회 홈페이지(konex.or.kr)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이와 같이 코넥스시장은 자본조달 시장의 한 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스닥 등 다른 자본조달 시장과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스닥 상장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코넥스 상장회사 수는 감소 및 정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가령, 코스닥에 도입되어 있는 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코스닥 직상장을 선호하는 추세는 코넥스 상장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코스닥	신규상장	37	67	109	70	78	90	97	86	100	79
시장	상장회사	1,009	1,061	1,152	1,209	1,267	1,323	1,405	1,468	1,532	1,611
코넥스	신규상장	45	34	49	50	29	21	17	12	7	14
시장	상장회사	45	71	108	141	154	153	151	143	131	132

자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코스닥의 특례상장 제도로 기술평가특례(2005.3.28. 도입), 성장성추천특례(2017.1.1. 도입)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특례상장제도의 도입배경 역시 현재의 영업 실적과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해 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코넥스시장의 고유 기능과 차별성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특례상장제도 현황]

구분	기술평가특례	성장성추천특례
도입배경	현재의 영업실적과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①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②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해 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입	
도입시기	2005.3.28.	2017.1.1.
적용대상	■ 국내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20% 이상인 기업	■ 국내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20% 이상인 기업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가 적격 해외증권시장 소재지에 설립 - 상장주선인이 일정 요건 충족	(미적용)
적용요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 국내기업: A&BBB 이상 (시총 5천억원 이상 단순평가(A), 시총 1조원 이상 기술평가 생략)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A&A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국내기업

구분	기술평가특례	성장성추천특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택일)	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②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기타 상장요건	그 외 주식분산, 감사의견, 지배구조 등의 상장요건은 일반기업과 동일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의 경우 IPO시장 회복으로 2022년도보다 코스닥 상장 여건이 개선되어 코스닥 직상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까지 5개 사가 코넥스 시장에 신규상장 되었으며, 1개 사가 추가로 상장신청을 하여 금년에는 코넥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코넥스시장에 한정하여 유인을 제공하는 활성화 방안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시점에서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별도로 전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코넥스시장의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와 검토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²⁾

2)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기획재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제언이 제시된 바 있다.

가. 현 황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특례 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되어 2022년 9월 출시되었다.

동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보증을 공급하는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¹⁾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하는 보증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정부재정을 출연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출연금 예산 480억원의 산출근거는 2021년 햇살론15 보증거절자 약 12만명에 구제가능비율 40%를 적용하고 평균대출금액을 500만원으로 하여 산출된 공급목표 2,400억원에 사업손실률 20%를 적용한 것이며, 2022년도에 출연금 예산 현액 48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48,000	-	-	48,000	48,000	-	-	28,00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출시 당시 2개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2022년 중 4개, 2023년 상반기 중 5개 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을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품 출시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 추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은 1차로 2022년 9월 29일 광주은행 및 전북은행 등 2개 금융기관에서 출시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차로 2022년 4분기 중에 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3차로 2023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2022년 4분기 중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던 4개 금융기관 중 1개 금융기관만이 11월 대출상품을 출시하였고, 그 외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었다. 2개 금융기관의 경우 2023년 3월과 5월에야 취급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1개 금융기관의 경우 2023.10월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5개 금융기관의 경우도 현재 운영준비가 지연되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4분기에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바, 당초 계획 대비 대출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현황]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계획)	대출상품 출시일자	대출상품 출시 예정 시기
1차 (2022.9.29.)	◇◇은행	2022. 9.29.
	◆◆은행	2022. 9.29.
2차 (2022.4분기)	□□저축은행	2022.11.14.
	■□저축은행	2023. 3.13.
	△△저축은행	2023. 5. 3.
	●●저축은행	-
3차 (2023.상반기)	◎◎저축은행	2023.10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2023. 7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2023.10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2023.12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2023.12월 출시 예정
	■■■■저축은행	2023.12월 출시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대출상품 출시 금융기관이 당초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산개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한정될 경우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대출상품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에 따른 피해 방지 등 사업 추진의 취지와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280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²⁾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각 금융기관의 운영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상품 출시에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로서 과거 연체이력 보유자 등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보증공급 사업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은 정부재정 출연금을 기반으로 최저신용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기존 고금리 대안자금보다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한시특례보증과 유사한 기존 고금리 대안자금 공급상품으로 ‘햇살론15’가 있는데, 지원대상 요건에서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햇살론15’의 경우 빈번한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나, 한시특례보증의 경우 빈번한 연체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 당시 연체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연간 지원인원 4.8만명(2021년 햇살론15 보증거절자 약 12만명에 구제가능비율 40%를 적용) × 1인당 평균 보증금액 300만원(2022년 1인당 평균 보증금액) × 예상손실률 20%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비교]

구 분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위탁보증	특례보증	
목적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는 대안자금 공급 (위탁보증) 15개 협약은행 영업창구 또는 모바일 비대면 채널을 통해 자격심사에서부터 보증 및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진행 (특례보증) 정규화된 은행의 위탁보증 심사로는 보증심사가 어려운 현금수령자 등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은행에서 대출실행		연체경험 등으로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
요건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신용점수 하위 10% 이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1,400만원 (202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2천만원으로 상향)		최대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5.9%		연 15.9%
금리인하 혜택	① 성실상환 시 3년 약정시 연 3.0%, 5년 약정시 연 1.5% 금리 인하 (최대 6%p 금리 인하 혜택 받을 경우 최종금리는 9.9%) 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진행시 금리 0.1%p 인하		① (좌동) 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진행 시 금리 0.1%p 인하(금융교육 의무화)
보증비율	100%		100%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심사방식	일반적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상환능력 등을 심사		상환의지 등 비금융정보도 심사에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의 보증공급 실적은 2023년 4월말 현재 7만 850건에 1,830억 100만원이며, 한시특례보증의 대위변제 건수는 1,129건, 대위변제액은 33억 400만원, 대위변제율은 1.6%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보증공급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2.9.	2022.10.	2022.11.	2022.12.	2023.1.	2023.2.	2023.3.	2023.4.
보 증 공 급	신규	건수	3,619	11,748	10,763	8,078	8,665	8,890	11,221	13,403
		금액	11,526	34,808	33,007	20,854	22,003	21,111	26,358	31,192
	기말 (잔액)	건수	3,619	15,203	25,633	33,190	41,197	49,336	59,541	70,850
		금액	11,526	45,810	77,663	96,689	116,435	135,079	158,123	183,001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한시특례보증은 신청 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융교육과 자금용도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대출 심사 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이에 비례하여 대출한도를 차등부여하는 한편, 자금지원 이후 성실 상환 시 매년 최대 3%p 금리 인하로³⁾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 보증공급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점,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이 빈번한 연체경험을 가진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2022년 기준 15.5%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 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컨설팅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등 보증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p 인하,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가. 현 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197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마련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소득수준 및 만기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등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일반과 저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수준 분류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및 한도(2022년 기준)]

구 분		일 반	저소득
저축 가입대상	농민	1ha초과~2ha이하 농지소유(임차) 농민, 타인농업종사자	1ha이하 농지소유(임차) 농민
	어민	5톤 초과~20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어선원, 양식어민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임업인	5ha 초과 ~ 10ha 이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임차)한 임업인	5ha 이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임차)한 임업인
	양·축가	젓소 10마리 초과~20마리 이하 등 일정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저축형태		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	
저축기관 지급금리		연 2.91%(2022년 기준)	
저축장려금 지급률 (연이율)		3년 0.9%, 5년 1.5%	3년 3.0%, 5년 4.8%
저축 가입한도		연 240만원 이하	
저축 취급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농어가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으로, 농어가기금의 수입은 기타재산수입과 법정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법정부담금은 한국은행의 출연금이며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50% 이상을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¹⁾ 사실상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1:1 비중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다.

지출은 저축장려금, 기금관리비,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등이 있으나, 거의 모든 지출이 저축장려금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농어가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2억 6,0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557억 1,700만원 대비 24억 5,700만원 감액되었으며, 법정부담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각각 266억 1,500만원, 저축장려금 53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총 계	55,717	55,717	53,260	95.6	총 계	55,717	55,717	53,260	95.6
자체수입소계	26,615	26,615	26,638	100.1	저축장려	54,628	54,628	53,260	97.5
기타재산수입 (54-546)	-	-	23	순증	저축장려금 (1631-301)	54,628	54,628	53,260	97.5
법정부담금 (59-593)	26,615	26,615	26,615	100.0	-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차입금 및 여유 자금회수 소계	2,487	2,487	7	0.3	기금운영비	1	1	-	-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7	7	7	100.0	기금관리비 (3276-201)	1	1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2,480	2,480	-	-	-				
정부내부수입 소계	26,615	26,615	26,615	100.0	여유자금운용	1,088	1,088	-	-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26,615	26,615	26,615	100.0	한국은행예치 (9701-970)	8	8	-	-
					통화금융 기관예치 (9701-971)	1,080	1,080	-	-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농어가기금은 기금 운용에 적합한 사업과 재원운용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회계 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수입재원과 지출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기금 재원의 조성 방안 개편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주체와 관련한 부처 협의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가기금은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연간 저축한도와 저축장려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존치 의견을 받은 후, 2019년 및 2022년 기금 존치평가에서는 저소득 농어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 만기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하였다.

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저축에 대한 이차지원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며, 낮은 저축한도로 실제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지원 효과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추세적으로 연간 수혜대상과 기금의 지출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효과는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농어민에 대한 저축장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022년말 기준 23만좌로 1조 2,903억원이 불입되었으며, 저축장려금으로는 533억원이 지급되었는 바, 사업추진 실적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운영실적]

(단위: 천좌,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입계좌수	346	317	296	276	277	267	254	234
불입액	11,177	10,037	9,585	9,507	10,086	11,370	12,952	12,903
저축장려금	988	1,006	831	829	708	678	682	533
저축기관 지급금리	3.39	2.59	2.05	2.45	3.11	2.72	1.82	2.91

자료: 금융위원회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의 지속 여부는 재산형성 지원 제도로서의 실효성, 농어민 대상의 특수한 정책적 고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3월 21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2023.9.22. 시행)이 개정된 바 있고,²⁾ 불입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통한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농어가기금의 재정운용 구조를 보면, 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과 정부재정 출연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출연금은 기금의 자체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나 기금 지출사업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농어가기금은 기금 운용에 적합한 사업추진 방식과 재정운용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종전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 결산계(A)	법정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D)	
		(B)	(B/A)	(C)	(C/A)	(D)	(D/A)
2017	83,099	41,542	49.99	41,542	49.99	15	0.02
2018	82,961	41,467	49.98	41,467	49.98	27	0.03
2019	70,815	35,395	49.98	35,395	49.98	25	0.04
2020	67,761	33,872	49.99	33,872	49.99	17	0.03
2021	68,240	34,112	49.99	34,112	49.99	16	0.02
2022	53,260	26,615	49.97	26,615	49.97	30	0.06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중장기 여유자금 운용 없이 한국은행 출연금과 정부재정으로 수납된 수입으로 당해연도 저축장려금 지급에 대부분을 집행하는 단년도 사업추진방식으로 운용되어 기금으로 존치할 실익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월별 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 ¹⁾	10,000	7,072	11,308	6,870	6,108	5,942	5,399	4,792	4,631	4,858	2,027	136
한은	-	-	10,000	5,000	-	4,000	-	4,000	-	3,615	-	-
일반회계	10,000	6,000	-	-	4,000	-	3,000	-	3,615	-	-	-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	1	2	2	2	4	2	2	3	5	-
지출	10,000	7,072	11,308	6,870	6,108	5,942	5,399	4,792	4,631	4,858	2,027	136
장려금	8,928	5,766	9,439	4,764	4,168	3,547	4,608	3,778	3,391	2,836	1,899	136
여유자금운 용 ²⁾	-	-	-	-	-	-	-	-	-	-	-	-
차월이월 (한은예치금+ 위탁운용잔액)	1,072	1,307	1,868	2,106	1,940	2,395	791	1,014	1,240	2,022	128	-

주: 1) 당월 수입 = 전년도 차월이월액 + 한국은행출연금 + 일반회계전입금 +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2) 여유자금운용은 한국은행 예치금 및 통화금융기관예치금으로, 여유자금 운용(9700)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농어가기금은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 내 사업의 추진 방식, 수입재원과 지출사업 간의 연계성, 자체 수입의 비중, 중장기가용자산의 운용 현황 등을 볼 때, 기금으로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기금 운용의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재원과 지출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기금 재원의 조성 방안 개편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민이라는 특정 집단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이자율 이상을 보조해 주는 기금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원회가 농어가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적절한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정책 대상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재정사업으로 이전하는 방안³⁾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2022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4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54	54	0	0	100.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사회적참사특조위)

2022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8억 8,300만원이며, 이 중 65.2%인 103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5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529	12,511	15,883	10,358	-	5,525	65.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사회적참사특조위)

나. 재무 결산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하고 12월 잔존 사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기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없다.

자산은 유동자산의 경우 미완료 연구용역 등 관련 선급금이 6억 8,700만원, 기타자산 임차료 등 관련 선급비용이 1,700만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7억 400만원(△100.0%) 감소하였고, 구축물·집기비품·기타일반유형자산 등은 감가상각 및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으로 인하여 전기 대비 5억 4,600만원(△100.0%) 감소하였으며, 무형자산은 상각 및 폐기로 전기 대비 2억 5,800만원(△100.0%) 감소하였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미지급비용 감소로 전기 대비 500만원(△100.0%) 감소하였고, 장기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퇴직급 지급 및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1억 5,500만원,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가 복구공사 완료 및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3억 2,600만원 감소하는 등 전기 대비 4억 8,100만원(△100.0%)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	1,507	△1,507	△100.0
Ⅰ. 유동자산	-	704	△704	△100.0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	546	△546	△100.0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	258	△258	△100.0
Ⅵ.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486	△486	△100.0
Ⅰ. 유동부채	-	5	△5	△100.0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481	△481	△100.0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	1,021	△1,021	△100.0

주: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22년 12월 10일 잔존 사무처리를 완료

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9억 7,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35억 6,000만원, 관리운영비 84억 6,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억 6,000만원(△7.4%) 감소한 119억 7,9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3,560	2,780	780	28.1
II. 관리운영비	8,461	10,166	△1,705	△16.8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42	8	34	425.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1,979	12,939	△960	△7.4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979	12,939	△960	△7.4

주: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22년 12월 10일 잔존 사무처리를 완료

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0억 2,100만원이고, 위원회 활동종료 등에 따라 전액(△100.0) 감소하여 기말 현재 순자산은 없다. 관리운영비 등 감소로 인하여 비용이 9억 2,600만원 감소하고 기타수익이 3,4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영결과는 119억 7,900만원으로 전기 대비 9억 6,000만원(△7.4%) 감소하였다.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09억 5,8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2억 1,100만원(△10.0%) 감소하였다. 재원의조달은 111억 2,100만원으로 국고수입 및 기타재원조달 등의 감소에 따라 전기 대비 10억 5,5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이전은 1억 6,400만원으로 국고이전지출 및 무상이전지출의 증가에 따라 전기 대비 1억 5,600만원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021	1,791	△770	△43.0
Ⅱ. 재정운영결과	11,979	12,939	△960	△7.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0,958	12,169	△1,211	△10.0
Ⅳ. 조정항목	-	-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	1,021	△1,021	△100.0

주: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22년 12월 10일 잔존 사무처리를 완료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9억 600만원이며, 1,053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2%인 33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1,019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906	2,906	2,906	105,372	3,363	101,920	89	3.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00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6.3%인 48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0,197	50,017	50,069	48,192	0	1,877	96.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산은 1,048억 5,500만원, 부채는 18억 7,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029억 8,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012억 6,400만원, 일반유형자산 8억 5,000만원, 무형자산 27억 4,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19억 800만원(3,458.0%)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998억 8,3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신규취득 등에 따른 무형자산 19억 7,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00만원, 장기충당부채 18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800만원(1.0%) 증가하였다. 이는 소송충당부채 등의 발생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04,855	2,947	101,908	3,458.0
Ⅰ. 유동자산	101,264	1,381	99,883	7,232.7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850	796	54	6.8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741	770	1,971	256.0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
부 채	1,871	1,852	19	1.0
Ⅰ. 유동부채	1	0	1	순증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1,870	1,852	18	1.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02,984	1,095	101,889	9,304.9
Ⅰ. 기본순자산	209	209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02,775	886	101,889	11,499.9
Ⅲ. 순자산 조정	0	0	0	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73억 3,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20억 1,700만원, 관리운영비 162억 6,4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1억 2,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4억 6,400만원(25.0%) 증가한 473억 3,6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출연비 등의 증가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97억 3,900만원 증가한 것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관리운영비가 12억 1,1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단일 프로그램인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320억 1,7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26억 100만원과 경비 36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억 2,200만원, 기타비용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2,017	22,278	9,739	43.7
가. 프로그램 총원가	32,017	22,278	9,739	43.7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16,264	15,053	1,211	8.0
III. 비배분비용	178	1,992	△1,814	△91.1
IV. 비배분수익	1,124	1,450	△326	△22.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7,336	37,872	9,464	25.0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47,336	37,872	9,464	2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0억 9,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029억 8,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18억 8,900만원(9,304.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94억 6,4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1,124억 2,4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528억 4,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60억 4,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095	2,165	△1,070	△49.4
Ⅱ. 재정부영결과	47,336	37,872	9,464	25.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49,225	36,801	112,424	305.5
Ⅳ. 조정항목	0	0	0	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02,984	1,095	101,889	9,304.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2022회계연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②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③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은 다수의 부처가 협업하여 산업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추진체계인 “법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를 통합·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출범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받거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 정보주체는 동의여부만을 결정하는 수동적 입장이었던 반면,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인, 제3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¹⁾

공공분야 및 금융 분야 등에서는 이미 개별 법률²⁾에 근거하여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2023.3.14.)되어 법적 근거³⁾가 마련되었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TTA저널 204호, 2022.11/12월호,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2)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21조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개정안은 2022년 12월 5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23년 3월 14일 개정됨

[부처별 마이데이터 사업 개요]

구 분	금융위원회 금융 마이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보건복지부 의료 마이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서비스 지원
정책 목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활용 기반 마련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본인 행정정보 유통 기반 마련	환자중심의 의료 혁신을 위한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인정보 활용 실증 서비스 지원
제공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공공기관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기업	실증 수행기업
수혜자	금융서비스 고객	민원인(국민)	환자 및 보호자	실증서비스 이용자
공통 근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별 근거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의료법」 제21조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 간 데이터의 이동을 위해 2022회계연도에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구축 사업⁴⁾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5억원 전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하였다.

[2022회계연도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보장	2,500	2,500	-	-	2,500	2,500	-	-	-	3,197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¹⁾	2,500	2,500	-	-	2,500	2,500	-	-	-	3,197

주 1)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였고, 2,317백만원 집행하였으며, 183백만원 불용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코드: 일반회계 1032-303

나. 분석의견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은 다수의 부처가 협업하여 산업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추진체계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1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⁵⁾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제도기반)·보건복지부(의료분야)·행정안전부(공공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분야 및 실증)·금융위원회(금융분야) 등 부처별 마이데이터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동 정책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 등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계획으로 2021년 중 법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범정부 추진체계 역시 2021년 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향후 추진 일정]

2021년 중	2022~2023	2024~2025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완료 - 범정부 추진체계 강화 -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21. 하반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2년) - 본인인증·보안체계 마련 및 마이데이터 종합서비스 운영계획 수립('22년~'23년) - 이종산업간 연계를 위한 연구·실증사업('22년)	- 마이데이터 종합서비스 구축·운영('24년~) - 분야별 활용서비스 연계('24년~) - 개인정보 전송 활성화(계속)

자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2021.6.11.

이와 관련하여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⁶⁾ 마이데이터 관련 범정

5)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2021.6.11.

6) 「개인정보 보호법」

부 추진체계(“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는 2023년 6월 현재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에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마이데이터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공공금융 등 분야별로 추진 단계 및 속도에 차이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 사업과 연계·협력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전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마이데이터 사업 간 연계사업을 연차별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며,⁷⁾ 2022년에는 정보통신·교육·유통·문화여가·국토교통 등 5대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나,⁸⁾ 사업 추진 체계 구성의 미비로 인해 당초 제시한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가 지연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이하 생략)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로드맵”에 따라 2025년부터 개인정보 전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연계전송시스템 개발, 개인정보 전송지원 종합플랫폼 등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은 데이터 전송방식 규격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2023년~2025년까지 개인정보 전송지원 종합플랫폼 ISP 및 구축, 2025년부터 개인정보 전송서비스 시행 및 기구축된 타 분야 전송 플랫폼·전문기관 연계고도화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표준화: (‘22년) 공통항목 일부, 5개 분야(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23년) 공통항목 확대, 5개 분야(추가)

(‘24년~)공통항목 확대, 추가 분야 및 기존 표준 개선 등

- 시범서비스: (‘23년) 표준 활용 시범서비스 기획·설계(서비스 발굴)

(‘24년) 표준 활용 시범서비스 지원·확산

8) 데이터형식의 표준화와 전송방식 표준화,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 선정 등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총 4회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회계연도에 수행한 데이터 표준화 컨설팅의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표준관리 대상 및 절차, 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정의 후 지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해당 용역 결과에서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해당 용역 결과의 시사점으로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정정·철회권, 개인정보 보호 등)과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하여 정부의 유통 관제 및 전송규격의 철저한 관리 역할이 필요하며, 제공자-수신자의 상호 신뢰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및 표준 규격 이행 준수 인증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단순히 각 부처 간 업무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확립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속히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당초 계획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구 분	내 용
0단계: 조회	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
1단계: 저장	기관 홈페이지(또는 웹)에 접속해서 나에 관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저장하는 수준으로, 초기 단계
2단계: 전송요구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3단계: 대리활용	전송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보낸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산업 내)
4단계: 전 분야 확산	본인의 적극적 관리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

자료: 4차 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2021.6.11., p.13.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활용방식에 따라 5개 단계(0단계~4단계)로 구분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부처에서의 마이데이터 활용 단계를 3단계(대리활용)에서 4단계(전 분야 확산)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분야별 구분 없이 마이데이터 전송 및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속히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동 사업의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작은 위반행위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의 유출·침해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¹⁾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사건처리 및 위반사례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14일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²⁾을 발표하고 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며, ②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단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³⁾ 등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을 위해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자문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 지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 관련 사업의 결산을 살펴보면,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일반수용비⁴⁾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는 예산현액 1억 4,400만원 중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신고현황 (‘20년) 1,091건 → (‘22년) 1,923건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542>

3) 243개 지자체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는 29곳(광역12, 기초17)(‘22.12월 기준)

4) 코드: 일반회계 7011-251, 개인정보정책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등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위원회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205	205	-	-	205	198	96.6	-	7	212
일반수용비	144	144	-	-	144	143	99.3	-	1	14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조례」 수립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권역별 설명회⁵⁾(5회)의 집행내역⁶⁾을 살펴보면,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기관운영)의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일반수용비(법률자문료)로 총 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은 현수막과 책자 등 제작 378만원, 임차료 89만원, 자문료 15만원 등이 소요되었다.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용 용도	2022회계연도 예산과목	집행액
자문료	1030-300-210-01 [위원회운영지원(정보화)-일반수용비]	150
임차료	7011-255-210-07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임차료]	890
현수막, 책자 등 제작	7011-251-210-01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일반수용비]	3,78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22년 권역별 설명회 일정 : 경남권(22.7.12.), 수도권(22.7.21.), 전라권(22.8.26.), 경북권(22.8.31.), 충청권(22.9.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2건의 조례제정안 검토를 지원하였음 : 부산시(23.2.20.), 춘천시(23.4.7.))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에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3단계 안전조치 의무⁷⁾는 ① 필요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②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차단하며, ③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 승인·사후 소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처리사실을 알리도록 한 조치이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1만 6,199개 중 약 10%의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해당 의무를 부과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이후, 예비 선정된 1,624개 시스템의 접근권한·접속기록 점검 등 상세현황을 조사(22.8.~12.)하여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하였고 집중관리 시스템 1,515개(126종)(23.4.)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3단계 안전조치가 부과된 집중관리시스템은 중앙부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또는 접근이 가능한 지자체⁸⁾로 한정되고 별도의 자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개별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7) “3단계 안전조치 의무”

① 1단계는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이용기관의 목적 외 시스템 이용을 통제하고 취급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

② 2단계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기관은 이용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차단.

③ 3단계는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경우, 사전 승인·사후 소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

8)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은 개발·구축·운영하는 자에게 안전성확보조치 등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감독하지 않음, 다만, 중앙부처가 개발·운영하는 시스템(단일접속시스템)을 지자체가 이용하는 경우, 중앙부처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지자체 등 이용자를 관리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안전조치가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어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서 발표한 집중관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계획⁹⁾에 준하는 조례를 제·개정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 중인 광역·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공포일
경기도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12.5.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15.5.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2016.5.19.
전라북도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17.9.2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18.12.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7.30.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1.8.17.
전라남도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9.30.
경상남도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5.6.
충청북도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12.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2.12.2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2.12.2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3.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5월 기준

2023년 5월 기준, 광역(17)자치단체 중 13개의 광역시·도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고 대구, 울산,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조례를 미제정하였다.

9)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강화」 계획

- 범부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 후속으로,

① 집중관리시스템을 최종 확정하고(1,515개, 30개 부처 126종)

② 시스템별 현황조사 후 강화된 안전조치를 위해 4대분야 10개 과제 마련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 중인 기초자치단체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공포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14.3.24.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16.11.1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0.10.7.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0.1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0.12.31.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3.1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3.24.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4.7.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1.5.6.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6.30.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4.7.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	2022.4.15.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5.19.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7.13.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11.4.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12.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12.23.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2.7.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3.4.7.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4.10.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4.10.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5.1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5월 기준

기초자치단체(226)에서는 총 22개가 조례를 제정·운영하였는데, 이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10% 수준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제2항¹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1항 및 제4항¹¹⁾에 근거하여 조례 제·개정 독려 및 지원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지원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컨설팅을 강화하며 부진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현 황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¹⁾ 사업의 2022회계연도 본예산은 6억 2,4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을 통해 6,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다. 예산현액은 5억 6,000만원이고,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위원회 기본경비(기관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위원회기본경비 (기관운영)	624	560	-	-	560	460	-	100	54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무실 화훼 관리 비용 지급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서 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관련된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²⁾은 특정 시설 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무실 화훼 관리 비용(28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서 집행하였다.

신지현 예산분석관(elasticsjh83@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7011-255

2)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4.

[2022회계연도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사업의 잘못된 비목집행 사례]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집행일	비목	지급액	지급업체	지급용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본경비	위원회 기본경비 (기관운영)	2022-02-11	일반 수용비 (210-01)	1,420	○○ 꽃방	사무실 환경개선용 화훼 구입 비용
		2022-03-31		1,490		
		2022-05-02		700		
		2022-06-02		830		
		2022-07-01		880		
		2022-07-28		1,010		
		2022-08-31	650			
		2022-10-2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2,800		
		2022-12-12	일반 수용비 (210-01)	400		
		2022-12-27	430			
합 계				10,610		

자료: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및 지출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관서운영경비 지출부를 살펴보면, 10건의 사무실 환경개선용 화훼 구입 비용으로 총 1,061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022년 10월 28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각 사무실에 배치된 대형화분 20개에 대해 생육생태 관리, 병충해 관리 및 영양제 투입 등 화훼관리를 위해 28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이 아닌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집행하였다.

사무실 환경개선용 화훼 구입 비용은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관련된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 일반수용비(210-01목)³⁾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적정한 비목을 적용하여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7.

일반수용비(210-01목)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고료 및 광고료’,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나열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2983-2721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2983-272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